석 사 학 위 논 문

변호사의 법무실무를 위한 법률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2015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 헌 정 보 학 과

문헌정보학전공

김 지 현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서은경

변호사의 법무실무를 위한 법률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wyers' Leg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for the Law Practice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 헌 정 보 학 과
문헌정보학전공
김 지 현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서은경

변호사의 법무실무를 위한 법률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wyers' Leg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for the Law Practice

위 논문을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 헌 정 보 학 과
문헌정보학전공
김 지 현

김지현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변호사의 법무실무를 위한 법률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김 지 현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연구는 Leckie(1996)에 의해 모델이 제시되었고 이후 Otike(1999)나 Wilkinson(2001)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디지털 자원을 바탕으로 정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모든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추구행태가 변화하였고,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역시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기반으로 변호사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었던 요인, 변수, 행태 특성 및 정보추구행태 모델을 기반으로 오늘날의 한국 변호사의 실무수행에 있어서의 정보추구행태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총 21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10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분석 결과, 기존의 Leckie모델에서 주장되었던 변호사의 '업무 역할'은 한국의 변호사의 경우에도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변수로서의 변호사의 경험과 사무소 규모 역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작용하였다. 그 외에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소로서 '이용 목적'이 파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 선행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변호사들의 선호 행태, 즉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선호나 문헌 정보 선호의 행태 특성은 오늘날 한국 변호사에게는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한국의 변호사들은 온라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공식 정보인 법률과 판례를 검색하는 정보추구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정보추구행

태는 이에 맞는 법률정보서비스를 요구하게 된다. 정보요구자이자 동시에 정보이용자인 변호사가 그들의 정보요구에 맞는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급심 판례 공개 확대와 무료 사이트인 국가기관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정보 제공 요청이 그 주된 의견이었다. 이를 반영하면 보다 정보요구별 서비스, 정보추구행태를 반영한 서비스, 법률정보 특성에 맞는 법률정보서비스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정보 검색 및 각종 법무행위를 실무로서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정보추구행태가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되어 분석된 이번 연구가 한국 변호사들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연구 영역을 조금이라도 확장시키고, 나아가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개선과 법조인의 법률정보 서비스 이용 확대 및 만족 향상에 기여하길 바라본다.

【주요어】 변호사, 법률정보, 정보요구, 법률정보추구행태, 정보추구행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법무실무

목 차

I. 서 론 ·····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1.3 용어 정의 ····· 4

II. 이론적 배경 ····· 6

2.1 정보추구행태 모델 ····· 6
2.2 법률정보의 특성 ····· 11
2.3 선행연구 ····· 14
2.3.1 국내 연구 ····· 14
2.3.2 국외 연구 ····· 17

III.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 24

3.1 연구설계 ····· 24
3.2 연구대상자 ····· 25
3.3 자료 수집 ····· 27
3.3.1 설문지 조사 ····· 27
3.3.2 인터뷰 조사 ····· 29
3.3.3 분석 방법 ····· 29

IV.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분석 결과 ····· 31

4.1 변호사의 주요 업무 및 정보요구 ····· 31
4.1.1 주요 업무 ····· 31
4.1.2 정보요구 ····· 33
4.2 법률정보추구행태 분석 결과 ····· 35
4.2.1 실무상 이용하는 전체 정보 분석 ····· 35
4.2.2 전체 정보 입수경로 분석 ····· 40
4.2.3 실무상 이용하는 법률정보 분석 ····· 43
4.2.4 법률정보 입수경로 분석 ····· 46
4.3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 51
4.3.1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행태 분석 ····· 51
4.3.2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행태 분석 ····· 55
4.3.3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선 방향 ····· 59

V. 결 론 ····· 64

참고문헌 ····· 67
부 록 ····· 72

ABSTRACT ····· 81

표 목 차

<표 1> 연구자별 변호사 정보추구행태 분석 ····· 23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 26
<표 3> 설문지 구성내용 ····· 28
<표 4> 변호사의 주요 업무 ····· 31
<표 5> 정보요구가 발생하는 변호사의 업무 ····· 34
<표 6> 실무에서 변호사가 이용하는 전체 정보 ····· 36
<표 7> 변호사 실무관련 전체 정보 입수경로 ····· 41
<표 8> 실무에서 변호사가 이용하는 법률정보 ····· 44
<표 9> 실무에서 변호사가 이용하는 외국법정보 ····· 45
<표 10> 변호사의 법률정보 입수경로 ····· 47
<표 11> 변호사가 주로 이용하는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 52
<표 12>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중요 요소 ····· 54
<표 13> 법률정보 검색행태 ····· 55
<표 14>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접근점 ····· 57
<표 15>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실패 후 검색 방식 ····· 58
<표 16>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선점 ····· 59
<표 17>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선 희망사항 ····· 60

그 림 목 차

<그림 1> Leckie의 전문가 정보추구 모델 ····· 7
<그림 2> 정보추구행태 분석의 연구설계 ····· 24

Ⅰ.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보요구”(information need)는 각자가 소유한 현재의 지식상태로는 개인의 업무나 일상생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식(recognition), 즉 지식 격차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 정보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의식적 노력이 정보추구(information seeking)이다(Case, 2012). 따라서 정보추구는 의식적으로 정보원과 정보자원을 선택하고, 정보채널이나 정보전달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한 후 그 적합성을 판정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하는 맥락지향적이고 과정 지향적인 개념이다. 정보추구가 정보요구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면, “정보추구행태”(information seeking behavior)는 정보요구에 따른 결과이다(Wilson, 2000, p.5). 정보요구의 결과로서 정보이용자가 행하는 의식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정보이용자가 속한 환경이나 특정 집단, 직업, 역할 등에 따라서 정보추구행태는 달라질 수 있다.

정보추구행태 연구는 초기 일반적 정보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졌으나 1948년에 열린 “로열 소사이어티 과학 정보 컨퍼런스”에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자들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관련 개념과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자료나 시스템 중심보다는 정보요구자인 사람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양적 연구방법보다는 질적 연구방법이 강조되었다(Wilson, 2000, p.5; Case, 2012, p.289). 연구방향이 정보요구자 중심으로 변화하자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요구자의 환경, 역할, 직업 등에 대하여 연구초점이 맞춰지면서 각 분야 전문가의 정보추구행태도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즉, 초기에는 일상적 정보요구를 지닌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지다가 특정 주제 학술 정보를 심도 있게 추구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

석이 이어지면서 과학자와 공학자에 대한 정보추구행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사회과학자, 인문과학자 등에 대한 분석이 행해지고 점차 의사, 간호사, 경영자, 변호사 등과 같이 전문직 정보이용자들이 실무 수행 시 어떻게 정보를 추구하는가를 파악하는 연구로 옮겨가게 되었다(Case, 2012, p.288).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Leckie(1996), Otike(1999), Cole & Kuhlthau(2000), Wilkinson(2001), Kuhlthau & Tama(2001), Makri(2008)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선행 연구를 통해 변호사 등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가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수행된 시기의 정보 환경은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당시의 분석 내용을 그대로 현재에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온라인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신속·편리하게 정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오늘날의 정보 환경은 모든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추구행태를 변화시키고 있고, 선호하는 정보원이나 정보자원의 선택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전과 달리 온라인에서 방대한 법률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현 상황에서는 변호사들의 정보추구행태 역시 변화를 겪었다. 과거에 이용하던 문헌 자료나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른 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입수경로(정보채널)로 정보를 획득할 것이고 검색 방식에 있어서도 전자정보원의 이용에 맞도록 변화하여 기존과는 다른 행태를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기존 연구를 재검토할 필요가 생겨난다. 즉 디지털 환경에서 한국 변호사들이 법무실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새롭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보추구를 분석한 연구들(김정숙, 2010; 김황우, 2012; 주민지, 2013)이 있으나 이는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과 관련된 정보요구 또는 행태 분석 등을 시행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연구 대상이 전문가의 행태라기보다는 학생의 행태에 가까운 연구이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의 법무실무 과정에서의 정보추구행태 분석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가의 정보추구행태 연구의 일환으로, 법무실무에 초

점을 맞추어 전문가인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였다. 반구조화된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정보요구자이자 정보이용자인 변호사가 실무상의 정보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위하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변호사들이 법무실무를 수행할 때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그 반응으로서 행한 정보추구행위들을 이용 정보 선택, 정보 입수경로 선정, 데이터베이스 이용 등의 각 측면에서 기존 모델의 요인·변수를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변호사 정보추구행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관련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개선점을 논의해봄으로써 향후 법률정보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정보이용자인 법무실무자들의 정보 이용 만족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1965년과 1981년 사이에 태어났고 IT 환경에 익숙하여 인터넷 온라인 환경과 디지털 정보자원 이용에 거부감을 갖지 않는 변호사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전자정보자원이 현재의 정보 환경 내에서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변호사들은 법무실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정보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어떤 입수경로를 선정하며, 어떤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지 등을 기존 정보추구행태 모델의 변수들(경험, 소속기관 규모)을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변호사 정보추구행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변호사들은 정보추구행태 모델의 요인·변수를 따르는가?

둘째, 한국 변호사의 법률정보 추구행태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1명의 실무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시행하는 실증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변호사 정보추구행태 모델의 변수를 토대로 총 21명의 설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순위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에 분석되었던 변수들이 여전히 한국의 변호사들의 정보요구 및 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외에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따른 변수, 즉 또 다른 맥락적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10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21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곧 한국 변호사 전체의 정보추구행태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업무는 특정 업무 범위 내에 한정되어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수의 실무 변호사 행태 분석 결과임에도 전체 한국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법률정보 등 전문 분야 정보를 실무에서 이용하는 정보이용자로서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법률정보(legal information)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변호사의 실제적 법률정보추구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1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형식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넷째,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10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섯째, 기존 모델에서의 요인(업무 역할, 업무 성격 등)과 변수(경험, 사무소 규모, 개인 태도)를 참조하여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서 나타나는 이용정보, 정보채널, 검색 행태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법률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1.3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로펌(law firm)”은 법인 형태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가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또는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

다. 같은 의미를 '사무소'로 간단하게 표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로펌과 사무소는 혼용하여 사용한다.

"사내 변호사"(corporate counsel)는 로펌이 아닌 단체 즉, 일반 회사 등의 법인이나 기관 등에 근무하는 변호사(in-house attorney, in-house counsel)를 의미한다.

"클라이언트"(client)는 로펌 소속 변호사나 사내 변호사의 실무 시 고객으로서의 의뢰인(依賴人)을 의미하며, 클라이언트를 의뢰인과 혼용하여 사용한다.

"법률정보"(法律情報)는 헌법, 법률, 조약 그리고 하위규정인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뿐 아니라 판결, 결정 등 법적 구속력(拘束力)을 가진 법원(法源) 일체와 그 외에 법(法)에 관한 각종 정보 일체를 의미한다. 본래 법학에서 "법률"(法律)은 통상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의결을 거친 성문법(成文法) 형태의 법원(法源)을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 '법률정보'의 '법률'이라는 용어는 일반적 법(法)분야, 법학(法學) 등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법률문제"는 소송 사건과 관련된 판단 시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률상 해석이 필요한 문제로 사용하였다.

"사실관계"는 소송에 있어서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말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정보추구행태 모델

모델(model)이란 이론보다는 제한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때로는 정식 이론 개발에 앞서서 개발되기도 한다. 그리고 모델 자체가 이론과의 관계에서 정의되기도 하며, 모델을 '작은 이론'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론도, 모델도 결국은 실제(reality)를 간편하게 설명한 것이며, 모델은 실질적 삶을 기술하는 가설을 보다 쉽게 풀어준다고 할 수 있다(Case, 2012, p.134). Wilson은 모델은 곧 문제를 사고(思考)하는 틀이며, 이론적 주장 간의 관계를 설명해준다고 언급하였다(Wilson, 1999, p.250). 이론과 마찬가지로 모델 역시 개념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것이지만 보다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묶여있다고도 할 수 있다. 모델은 순전히 실용주의적이고 서술적인 것(예를 들면, 흐름도)에서부터 수학적 논리를 결합시킨 정식 모델까지 광범위하다(Case, 2012).

일반적인 정보추구행태 모델로는 기존의 Wilson모델들, Dervin모델, Ellis모델, Kuhlthau의 (탐색단계과정)모델 등을 들 수 있다(Wilson, 1999). 그 중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제시한 모델은 Leckie모델이다. Leckie(1996)는 이 모델 연구를 통하여 세 분야의 전문가 그룹(공학자, 의사·간호사,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문가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보추구과정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Leckie는 다양한 개념 중에서 모델에서의 공통된 몇몇 가정(假定)은 명확하다고 보고, 전문가의 정보추구에 대한 모델로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꼽았다. 즉, 전문가들은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업무의 측면, 곧 "역할"(role)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할'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서, 함께 수행해야할 임무(task)와도 연관된다. 그 예로 관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짜는 임무나 회계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역할(role)과 임무(task)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정보요구

(information need)를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문가 정보추구모델에 있어서 '역할'과 '임무'는 명확한 하나의 요인(要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림 1> 참조). 공학자, 의사·간호사,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역할'로 Leckie는 다섯 가지 역할을 들었다. 서비스제공자 역할, 관리자·경영자 역할, 조사자 역할, 교육자 역할, 학생 역할이 그것인데, 예를 들면,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대변인으로서 소송을 준비할 때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Leckie, 1996, p.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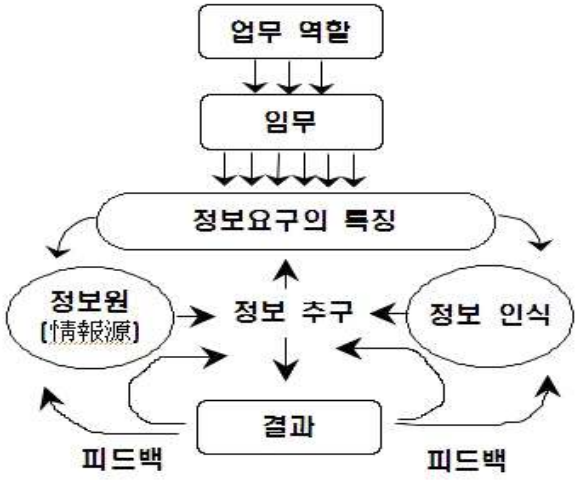

<그림 1> Leckie의 전문가 정보추구 모델

Leckie는 전문가 중에서도 특히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와 관련하여 특정 변호사가 (정보로서) 요구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변호사(및 로펌)는 실무에 초점을 맞춰 몇몇 특정 법영역으로 특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즉각적으로 정보요구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통상적으로 특정 영역의 법(예를 들면 물권법(物權法))의 경우는 소송 등 보다 노동집약적인 영역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양(量)의 조사 활동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변호사가 수행하는 일정한 '역할'이 독특한 행위 유형을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독특한 행위 유형이 이용 정보 유형, 검색 방법, 궁극적인 정보 이용

을 모두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에게 있어서 이러한 '역할'이 무엇인가의 질문에서 Leckie는 Martin Mayer의 주장을 언급하며, 작성역할(drafting role), 주장역할(advocacy), 협상역할(negotiating), 자문역할(counseling)과 같은 구분이 계속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변호사는 행정역할(administrative role)도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Leckie는 이 '자문 역할'에 클라이언트 상담, 전화 질의에 대한 대응 외에도 법원에서의 클라이언트 대변까지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Leckie는 이러한 요인(要因)외에도 몇몇 연구를 통해 분명해진 변수((變數)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첫째 변수로, 법률정보조사(legal research)에 대한 변호사 '개인의 태도'(attitude)를 들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변호사들이 법률조사를 싫어하며 학생이나 후임 변호사에게 요청한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변호사들이 정보검색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기도 한다. 둘째로, Leckie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사무소(로펌)의 규모'를 언급하고 있는데 크고 전문화된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 조사의 일부나 전부를 로펌 내 다른 인력자원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소형 로펌의 경우는 별다른 선택 여지없이 법률조사를 본인이 하게 되는 등 서로 상이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pp.174-175). 세 번째 변수로는 변호사의 경력 즉, '경험'을 들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한 끌어올 수 있고 동료에게 의견을 물어 일정 종류의 법률정보조사의 필요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변수로 '교육' 역시 이러한 변수에 해당된다고 보았는데, 로스쿨에서 법률정보조사(legal research) 과정에 대하여 보다 중점을 둔다면 변호사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다섯 번째 변수로는 '법률정보 자료 검색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Leckie에 따르면,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는 전문적인 '업무 역할'에 분명히 영향을 받지만 또한 여러 가지 개인적 요인이나 상황에 따른 변수 즉, '맥락상의 변수'(사무소 규모, 경험, 교육, 법률정보시스템, 실무 유형, 전문 영역 등)등도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하여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Leckie는 결론내리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 정보추구행태' 모델로는 Ellis모델(1989)이 있다. Ellis는 사

회과학자(social scientists)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여 모델을 제시한 후 Haugan과 함께한 연구(1997)에서는 공학자와 산업환경조사 과학자의 정보추구에 대한 모델도 제시하였다. 먼저 1989년 연구에서 그는 학계에 있는 사회과학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추구행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단계별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이 된 사회과학자는 사회 및 응용심리학 연구단과 심리학자 그리고 교육학·평생교육학, 그리고 경제학, 경제학 및 사회역사, 지리학, 정치학, 사회학, 선사학 및 고고학 등을 공부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했다(Ellis, 1989, p.175). 이들을 대상으로 보통 1시간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인터뷰 내용은 일반사항, 조사·교육 분야별 이력 사항, 정보이용의 특성 등에 대한 것이었다(p.211). 이를 통하여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추구패턴으로부터 정보추구의 특징(characteristics)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패턴은 몇 가지 특색(features)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파악하거나 알고 있었던 '핵심 참고문헌'(key paper)에 대한 확인 작업, 둘째, 과학 및 사회과학 '인용 인덱스'(citation index)를 통한 참고자료(reference)의 확인 작업, 그리고 셋째, 관련 저널 확인 작업, 넷째 관련되어 찾은 자료들을 통하여 작업하는 등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p.176). 이들 특색을 보다 공식적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다. 첫째, 연구를 시작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자료들을 확인하는 시작하기(starting), 둘째, 찾은 자료들의 참고자료를 따라가거나 저널의 서적 홍보 등의 정보를 찾아가보는 방식의 이어찾기(chaining), 셋째, 관련 저널 출처를 목차 등을 통하여 '훑어보기'식으로 찾아보는 브라우징(browsing), 넷째, 관련 출처의 내용을 통하여 작업하는 추출하기(extracting)로 정리될 수 있다(p.176).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계에 있는 사회과학자들을 통하여 다른 두 개의 특징도 파악했는데, 다섯째, 정기적으로 특정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발전된 지식을 유지(維持)하게 하는 모니터링(monitoring)과 여섯째, 자료를 걸러내기 위하여 정보 성향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구별하기(differentiating)가 그것이다. Ellis는 이들 여섯 가지 특징이 다양한 패턴들의 일반적인 특색을 포괄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면서, 동시에 정보검색시스템 디자인 및 평가를 위한 탄력적 모델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개별 패턴들도 이 모델의 특징들로 표현될 수 있고 보았다(p.178). 여섯 가지

특징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작하기 : 초기 정보검색의 특징적 행위
(2) 이어찾기(chaining) :인용이나 기타 자료 간에 참조를 연결해 놓은 형태를 쫓아가는 행위
(3) 브라우징 : 잠재적 관심 영역에서 반직접적 검색을 시행하는 것
(4) 구별하기(differentiating) : 검토 자료의 특성과 질(質)을 걸러내도록 정보자원 간의 차이점을 이용하는 것
(5) 모니터링 : 특정 정보출처를 주기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발전 상태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는 것
(6) 추출하기 : 관심 자료를 찾기 위하여 특정 정보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작업하기

이후 Haugan과 함께한 연구(1997)에서는 이들 여섯 가지 특징을 대체하거나 또는 추가하여 여덟 가지 특징으로 다시 정리하였는데, 서베잉(surveying), 이어찾기(chaining), 모니터링, 브라우징, 구분하기(distinguishing), 거르기(filtering), 추출하기(extracting), 끝내기(ending)가 그것이다. 일종의 '둘러보며 조사해보기'에 해당되는 '서베잉'은 새로운 영역의 문헌 자료들에 대한 개괄적 사항을 얻기 위하여 정보를 초기 단계에서 검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끝내기'는 정보추구과정을 종료하고 결론을 끌어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사실상 Ellis 모델 자체는 법학자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보추구행태 모델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온라인 정보검색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된 시점에서는 온라인 정보검색 행태를 분석하는 모델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Ellis모델을 정보탐색과정(information search process : ISP)에 접목시켜 새롭게 모델을 구성한 것이 Kuhlthau모델(1991)이다. Kuhlthau모델도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보추구행태 모델은 아니다. Kuhlthau는 정보탐색과정 모델을 통하여 정보추구 과정의 각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감정(feeling), 인식(thoughts) 행위(action)를 결합시켰고, 정보탐색과정의 단계를 여섯 개로 구분하여 개시(initiation), 선택(selection), 탐

구(exploration), 확정(formulation), 수집(collection), 제시(presentation)로 표현하였다(Kuhlthau, 1991, p.366). Ellis모델과 Kuhlthau모델은 정보추구가 일련의 과정 지향적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정보추구과정에서의 '단계(stage)별 행위'를 구분하여 모델로 구성하였는데, 특히 Ellis 모델은 이후 Makri(2008)에 의해 변호사 정보추구행태 연구에 적용되었고 또한 최근 온라인 정보 검색 행태 모델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판례의 적합성 판단에 있어서 변호사의 정신적 추론 과정과 그 구성에 대한 '사고(思考) 모델'(mental model)로서 Sutton모델(Sutton, 1994)이 있으나 행태가 아닌 인지(認知)측면이므로 본 연구에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

2.2 법률정보의 특성

앞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정보(法律情報)의 정의(定議)는 헌법, 법률, 조약 그리고 하위규정인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뿐 아니라 판결, 결정 등 법적 구속력(法的 拘束力)을 가진 법원(法源) 일체와 그 외 법(法)에 관한 각종 정보 일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 '법률정보의 범위'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고시, 지침, 규정, 기준, 요령, 지정, 훈령, 표준, 규칙, 세칙, 조약, 협정, 협약, 의정서, 헌장, 교환각서, 약정 등 다양한 "1차 법률정보" 뿐 아니라 법에 관한 모든 정보들 즉, 전문 서적, 주석서, 주해서, 편람, 해설서, 논문, 보고서, 동향, 뉴스 등 "2차 법률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등 호칭과 관계없이 관련 정보 일체를 포괄하며, 전달매체에 있어서도 문헌자료, 전자 정보, 구두 표현 등 형태와 관계없이 관련 정보 일체를 포괄하는 범위를 갖는다.

법률정보의 종류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이 일정한 구분을 제시하였는데, 1차 법률정보와 2차 법률정보로 나누는 구분이 이에 속한다. 김광진(1997)은 법적 구속력을 기준으로 이를 구분하였다. 즉, '법률정보'란 '법률과 관련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그 중 '1차 법률정보'는 "한 국가, 주(州)의 관할 구역, 법정(法庭)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헌법, 법률, 행정명령, 판례 등"이라고 정의하고, '2차 법률정보'는 그러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교과

서, 논문, 정기간행물, 법률실무편람과 기타 유사한 자료라고 정의 내렸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차 법률정보”는 1차 및 2차 법률정보원(法律情報源)의 탐색도구로서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고 하였다(p.5). 노정란(1998)은 원시(原始)상태를 기준으로, ‘법률정보’란 법령, 판례, 법률문헌 등을 말하며, 법령과 판례는 모든 법률정보의 기초를 이루는 원시자료라는 점에서 1차 법률정보로 보고, 원시정보에 대하여 특정 관점에서 견해를 피력하거나 연구 또는 설명하는 법률 문헌은 원시정보에 대한 2차적 결과물이라는 의미에서 2차 법률정보라고 보았다(p.28). 미국법의 경우 이러한 구분을 하는 법적 구속력을 기준으로 원시정보(primary sources)와 2차정보(secondary sources)로 구분하기도 한다(Berring, 1999, p.16).

법률정보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지은(1999)은 사서의 법률정보 서비스 측면에서 이를 기술하였는데, 첫째, 전문성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점, 둘째, 최신성이 요구되는 점, 셋째, 법률안 등은 법률제정과정의 각 단계별 자료도 중요한 자료라는 점, 넷째 법률연혁적 입장에서의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다섯째, 법률의 인접 주제분야 즉 관련 주제의 기본 배경도 알아야 한다는 점, 여섯째, 정부간행물로서 연속간행물인 형태의 자료가 많다는 점 등을 법률정보 특성으로 언급하였다(장지은 1999: 11).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법률정보의 종류와 특성을 함께 고려해보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1차적 법률정보’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1차 법률정보인 법령·판례는 특히 변호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개선방향 모색에 있어서 이러한 1차 법률정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1차적 법률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정확성을 필요로 한다. 1차적 법률정보의 정확성은 다른 정보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수준이며, 1차적 법률정보의 존재 의의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의 법적 강제력을 표현하는 공표(公表)의 대상이 되는 1차적 법률정보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복사본들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가장 정확한 원래적 내용을 담고 있는 공식 정보가 하나 이상 존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동일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상의 법률조항 문구와 ‘대한민

국 전자관보'의 법률조항 문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세터'에 있는 법률조항 문구가 서로 상이하다면 어느 정보를 가장 정확한 정보이자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구로서 인정할 것인가와 연결되는 개념이다. 즉, 1차적 법률정보는 가장 정확한 오리지널 원본을 보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1차적 법률정보 간에 유기적인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1차적 법률정보 즉 예를 들면, 법령의 경우 제정·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단독의 정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들과 상하(上下), 전후(前後)의 개념 등으로 묶이면서 유기적 연관성을 가진 '정보 덩어리'(information cluster)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법률정보 중 판례의 경우는 하급심 판례 및 상급심 판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등과 필연적으로 연관되며, 해당 판례에서 법령을 언급한 경우 해당 법령 조항과도 연관되고, 해당 판례로 인하여 학설이 생기거나 논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러한 논문정보, 교과서 등의 전문서의 내용과도 유기적인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1차적 법률정보를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판례와 관련된 정보 덩어리들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연관 검색 기능이 중요해진다. 법령도 마찬가지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관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신법(新法)과 구법(舊法)의 관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일반법과 특별법간의 관계들을 신속하면서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연관검색 기능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1차적 법률정보는 "현행 법률정보"라는 개념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 즉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의 정보가 되도록 "정보의 최신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일단 법적 효력을 상실하거나 아직 법적 효력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보들의 경우에도 "연혁" 또는 "예고"의 개념에서 동시에 관리되어야 한다.

넷째, 정확성, 연관성, 최신성 외에도 1차적 법률정보는 그 검색에 있어서 전문성과 검색편리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검색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예(例)가 법령에 있어서의 공포번호를 이용한 검색과 판례에 있어서 판례번호를 이용한 검색 방법을 갖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검색어로 사용가능한 판례번호는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와 같

은 형태를 갖는데, 이는 일정 규칙에 의해 조합된다. 즉 가나다 조합은 사건의 법 분야별 구분과 사건 심급에 대한 정보를 뜻한다.

2.3 선행연구

2.3.1 국내 연구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전문가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공학자, 인문학자, 사회과학자 등에 대한 정보추구행태 연구(박성미, 1996; 정현정, 1996; 노지현, 1996)를 비롯하여 이후 간호사의 정보이용행태 연구(이경아 1999),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별 탐색행태 분석(한승희, 이지연, 2006), 국방연구개발업무 종사자의 정보이용행태 연구(송종호, 오동근, 2008), 의사들의 의료정보추구행태 연구(김나원, 박지홍, 2009) 및 의사들의 정보요구·이용행태 연구(홍기선, 2008), 경영경제 분야 연구자의 정보추구행태 연구(배은주, 2012) 등의 전문가대상 정보추구행태 연구가 이어졌다. 전문가 중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 법학자 등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추구행태 역시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수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수적으로는 적으나 기존 논문에서 의미 있는 정보추구행태가 분석되었고 2012년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의 정보추구행태 연구를 포함하여,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광진(1997)은 석사논문에서 62명의 법조인(로펌변호사 45명, 판사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카이자승검정을 거쳐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법조인의 전문 분야가 외국법률정보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일부 전문 분야는 외국 법률정보 이용 행태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즉 일반 상사 및 기업 법무 분야와 금융 분야는 다른 외국 법률정보에 비하여 미국 법률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중재 분야는 일본 법률정보를, 해상분야는 영국 법률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법률정보 대리조사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동료 법조인, 법률 사서, 법학자, 사무소 직원 순이라고 밝혔다. 법체계별 법률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법체계로 인하여 법률정보 이용행태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즉 한국법과 대륙법계의 법률정보를 찾는 경우 법조인들이 선택하는 정보전달매체는 책자, 본인이나 소속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CD-ROM과 마이크로폼 순이었으나, 반면 영미법계 법률정보를 찾을 때에는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김정숙(2010)은 선행 연구 중 Kuhlthau의 모델(2001) 즉, 정보탐색과정(information search process)과 관련하여 Kuhlthau가 제시했던 모델을 기반으로 로스쿨 학생의 정보탐색과정을 분석하였다. 5명의 로스쿨 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참여자가 작성한 일기와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로스쿨 학생들이 수업준비, 과제 해결 및 시험 대비에 있어서 어떤 정보탐색과정을 거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로스쿨 학생들의 정보탐색과정은 과업 착수, 초점 체계화, 정보 수집, 탐구 종료 순으로 진행되며 수동적인 학습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Kuhlthau가 제시한 단계 중 주제 선택이나 탐구(exploration) 단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김황우(2012)는 석사논문에서 가설 설정 및 설문을 통한 양적 연구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개인적 특성(성별, 학년, 전공학위)에 따라서 정보이용의 중요 요소(정확성, 최신성), 정보검색행태(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탐색 비율) 등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세워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독립 변인으로는 성별, 학년, 전공학위를 두었고, 종속 변인으로 정보 이용의 중요 요소, 정보추구 장애요인, 학술정보 이용정도, 정보검색행태, 법학전문도서관 이용을 두었다. 11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438부의 설문응답을 받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개인적 특성 중 학년별로는 정보이용의 중요 요소에 있어서 의의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이나 전공학위별로는 의의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탐색 비율의 차이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의의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반해, 학년별·전공학위별로는 의의있는 차이

가 없었다고 분석하였다.

주민지(2013) 역시 석사논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추구행태를 연구하였다. 앞서 김황우의 연구와는 달리 21명(비법학사 출신 9명, 법학사출신 12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일대일 인터뷰에 의한 정성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개인적 특성(연령, 학부전공, 컴퓨터 사용능력)과 법학이라는 학문적 특성, 법학대학원의 특성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요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요구맥락과 그에 따라 각각 선호하는 정보채널을 분석하였다. 정보요구맥락은 과제해결, 실무 수습 기관 검색, 시험 준비, 외부 대회 준비, 학회 준비, 학사 정보 검색, 수업의 예습·복습, 세미나 준비, 취업 기관 검색, 스터디 준비, 실무 수습 시 참고 자료 검색, 공부 방법 검색 등을 위한 정보요구로 구분하였고, 그에 따라 각각 선호하는 정보채널로는 판례·법령, 책, 논문, 연속간행물, 검색포털, 블로그·인터넷 카페, 스터디 동료, 예비법조인 친구, 메일링서비스, 선배, 학교 주최 간담회, 학회 동료 등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20대는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찾는 것을 선호하였고 30대는 도서관에 직접 가서 정보를 찾는 것을 선호하였다. 법학사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비법학사 출신보다 정보검색의 빈도 및 활용능력이 낮았다. 컴퓨터 사용능력도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요구에는 영향을 미치나 정보추구행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법학의 학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근거가 확실하고 권위 있는 자료가 선호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은 실습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무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려는 요구가 발생된다고 하였다.

김민규(2013)는 석사논문에서 법원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동기, 정보이용태도, 정보만족, 이용만족 간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그 각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각 지역 법원도서관 12곳의 이용자 31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이용동기는 정보탐색·접근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보만족과 관련해서는 정보이용과 정보내용의 질(質)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보만족과 이용만족간의 관

계에서는 정보만족은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보의 최신성·정확성, 정보이용의 질로 분석되었다. 이용자 유형에 따른 차이로는 정보접근능력에 있어서 법관이 법원공무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추구행태는 사실상 전문가 집단의 정보이용행태와는 구별되며, 오히려 전문가보다는 학생의 정보이용행태 연구와 연관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최미순(2008)은 Kuhlthau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정보추구행태 모형은 정보이용자 집단의 특성 등에 따라 강조되는 점이 달라질 수 있고, 적용되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보추구행태 연구는 특정 집단의 특정 상황에서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정보추구행태를 특정화 및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최미순, 2008, p.46). 결국 특정 집단의 정보추구행태 연구는 심층적인 자료를 통하여 맥락 안에서 연구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질적 연구가 정보추구 분석에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밝히고 있다.

2.3.2 국외 연구

전문가의 정보추구행태 연구는 과학자의 정보추구행태 연구에서부터 점차 기술자, 사회과학자, 인문과학자, 의사, 경영자, 변호사 등으로 그 연구 대상이 옮겨졌으며, 그 중 변호사의 정보요구 및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Leckie(1996), Otike(1999), Cole & Kuhlthau(2000), Kuhlthau & Tama(2001), Wilkinson(2001), Makri(2008)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를 통해 학자들은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주는 여러 다양한 요인(要因)들과 그러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정보요구에 따라 변호사들이 선호하며 추구하는 정보 유형에 대하여 분석해왔다. 먼저, 학자별로 구체적인 국외 선행 연구의 내용을 파악해 본다.

Otike(1999)는 영국의 변호사 및 법학연구자 33명의 인터뷰를 통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부 변호사 및 법학연구자가 인터뷰 전에 미리 30분 인터뷰에 적합하도록 내용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고, 따라서 인터뷰는 평균 30

분 정도 이루어졌다. 대상은 영국 런던시와 미들랜드 근방의 24명의 실무 변호사와 9명의 법학연구자들(이하 '변호사 등')이었는데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었다. 인터뷰 방식은 구조화된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함께 조합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 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직업상 시간적인 압박을 받는 변호사들의 경우 인터뷰 지연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다(Otike, 1999, p.29).

Otike는 변호사 등의 정보요구는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 즉, 업무의 유형(type of work)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p.31). 실무 변호사의 업무는 클라이언트(의뢰인)에 대한 상담, 소송 수행, 계약서 등 문서작성, 로펌(사무소)의 운영 사항 수행을 포함하며, 법학연구자들의 업무는 주로 교육, 연구, 조언 등이라고 보았다. 또한 변호사 등이 요구하는 정보 유형 역시 이러한 그들의 업무 성격(nature of the work)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p.36). '업무 성격'외에 '경험' 역시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였다. 초임 변호사는 상당한 시간을 법률자료 조사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단계를 거쳐야하기 때문이고, 반면 전문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경우는 이런 모든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에 대한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몇몇 단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작은 규모의 사무소'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설치할 여유가 없고, 마찬가지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에도 접속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p.39).

결론적으로 '정보요구'는 '업무 성격'(nature of the work)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역으로 '정보추구성향'(information seeking habits)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p.38). 변호사 정보추구행태 특성 분석에 있어서 Okite는 변호사 등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동료나 개인의 접촉이라고 하였다. 인터뷰에서 답변한 모든 실무 변호사나 법학연구자가 동료를 중요시했고 특히 실무 변호사의 경우는 동료로부터의 정보가 대단히 유용하다고 보았다. 서면(書面) 형태나 전자정보로 된 정보를 찾기에 앞서 첫 번째로 동료들에게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동료에게 정보를 얻는 것이

변호사들에게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변호사 등이 중시하는 정보 유형은 '법학저널'이었다. 법학연구자는 특히 법학저널을 중시하며, 경우에 따라 동료를 접촉할 수 없는 경우 상당수 답변자들은 법학저널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회의·컨퍼런스·세미나이고, 그 외에 훈련 변호사나 사무소 검색직원에게 검색을 요청하거나 법학 도서관 이용, 로펌 자료실 이용 등의 정보 입수경로가 있다고 하였다(pp.32-35). 서면으로 된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전자적 매체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Otike는 실무 변호사의 경우 수습 변호사나 신입 변호사, 사무실의 검색담당자에게 법학 자료 조사를 부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선호 여부에 대해서 Leckie는 이는 변호사마다 다르며 일종의 변호사 '개인의 태도'라고 보았다(Leckie, 1999, p.174).

Cole과 Kuhlthau(2000)는 몬트리올과 뉴저지 지역 15명의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변호사 '경력'(경험)이 정보추구 행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임무(task) 및 정보추구 측면에서 경험이 적은 '초임 변호사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7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경험 변호사 그룹'과 서로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임 변호사들은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을 각각 분리하여 사안을 처리한 반면,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는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을 서로 연결하여, 소송 등에 있어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조기에 개념화함으로써 수집된 정보에 '가치를 부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식을 클라이언트나 판사·배심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등에서 그들의 '가치 부가 능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Cole과 Kuhlthau는 "법률정보추구"(legal information seeking)란 결국 관계자(클라이언트, 판사, 배심원)를 상대로 가치가 부가되도록 지식과 이해한 사실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Makri, 2009에서 재인용).

Kuhlthau와 Tama(2001)은 미국 뉴저지 지역의 중소규모 로펌에서 일하는 8명의 실무변호사를 대상으로 대략 1시간 동안의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Kuhlthau & Tama, 2001, p.29). 이 연구에서 '이용 정보'에 있어서는 8명의 변호사 모두 보다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컴퓨터 데이터베

이스보다는 서면(書面)으로 된 정보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는 컴퓨터 시스템이 변호사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선택을 주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특정된 것을 검색하도록 요구하는 점과 변호사들이 한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정보를 얻는 정보채널 즉, 일종의 '정보 입수경로'에 대해서는 내부, 외부, 사람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내부 문서(internal office files)는 세 가지 유형의 정보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담고 있는 파일, 둘째는 종료된 사건의 내용을 담은 파일, 그리고 실무 분야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담은 파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종료된 사건으로부터 얻어진 일부 내부 문서는 이후 유사한 사건을 취급할 때 참조하기 위해 보관하게 된다고 한다. 8명의 변호사 모두 미래의 어떤 시점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종료 사건에 대한 중요 정보를 보관하는 일종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p.35). 외부 정보채널인 인터넷은 법률정보보다는 일반적인 정보에 접근하는데 보다 유용한 방식라고 보고 있었다. 세 번째 입수경로인 '사람'으로부터의 정보로는 '동료'가 중요한 정보제공자로서 꾸준히 언급되었다.

Wilkinson(2001)은 실무문제 해결 시 변호사들이 이용하는 정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한 바 있다. Wilkinson은 기존에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했다고 보고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변호사들의 '이용 정보'의 유형에 대한 조사보다는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자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 변호사 15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인터뷰 시간은 2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실시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실무(law practices)와 관련하여 당면했던 최근 '문제(problem)'들, 각 사안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했던 정보 등에 관하여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대상이 된 변호사들이 근무하는 사무소 즉, 로펌(law firm)의 규모를 중심으로 하여 1인 사무소 변호사, 중간 규모 사무소 변호사, 대형 규모 사무소 변호사, 초대형 규모 사무소 변호사, 사내 변호사로 나누었으며, 이들에게서 전체 154개의 답변을 얻었다. 이 연구에서는 변호사가 추구하는 대략 24개의 정보 유형을 '공식(formal) 정보'와 '비공식(informal) 정보' 그리고 '외부(external) 정보'와 '내부(internal) 정보'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공식 정보

는 사무소 절차, 내부 위원회, 법령, 판례, 세미나, 변호사협회 자료, 상대변호사, 판사 등으로 보았으며, 비공식 정보는 (로펌)동료, (로펌)파트너, 로펌 외 동료, 기타 전문가, 친구, 경찰, 은행, 클라이언트(의뢰인), 의뢰인 가족, 의뢰인 친구 등으로 구성하였다. 반면 외부 정보는 법령, 판례, 변호사 윤리법, 상대변호사, 판사, 경찰, 은행, 로펌 외 동료, 기타 전문가, 친구, 클라이언트(의뢰인)의 가족이나 친구로 구성하였고, 내부 정보는 (로펌)동료, (로펌)파트너, 사무소 절차, 내부 위원회, 클라이언트로 구성하였다. 변호사들은 답변할 때 공식·비공식 유형의 정보와 관련하여 '공식 선호', '비공식 선호', '특별히 어느 것을 더 선호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답변하도록 했으며, 내·외부 유형의 정보 역시 '내부 선호', '외부 선호', '특별히 어느 것을 더 선호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

이 분석에 의하면 변호사들은 해당 문제를 처리·해결함에 있어서 '이용 정보'(used resources)로는 내부 정보와 비공식 정보를 각각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공식 정보와 비공식 정보의 선호에 있어서는 어느 쪽도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힌 답변자가 32명(21%)이었는데, 이들을 제외한 122명중 105명의 답변자(68%)가 비공식 정보 이용을 더 선호하였고 단지 17명의 답변자(11%)만이 공식 정보 이용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의 선호에 있어서는 어느 쪽도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힌 답변자가 48명(31%)이었고, 선호를 표시한 106명의 답변자 중 62명(40%)이 내부 정보를 선호하고, 44명의 답변자(29%)는 외부 정보를 선호한다고 답변하였다.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 선호에 있어서의 이러한 선호 패턴 즉, 가장 많은 비율의 답변자가 내부 정보를 선호하고 그 다음 많은 비율의 답변자가 특별한 선호가 없으며 그 다음 근소한 차이의 비율로 외부 정보를 선호한다는 패턴 자체는 남녀의 성별이나 사무소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다만, Wilkinson 본인도 논문의 주(註)에서 언급하듯이 양적 연구 측정방법인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사용함에 따라 이 패턴에서 사내 변호사의 경우는 적은 수의 데이터로 인하여 의미 있는 카이제곱 검정 비교를 하기가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p.268). 그리고 어느 쪽도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답변자들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나면,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사무소의 규모' 즉 '로펌의 크기'에 따라 근무하는 변호사의 이용 정보 선호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경우 내부 정보를 더 선호하는 반면, 소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경우는 외부 정보를 약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단 선호를 나타내지 않은 답변자를 제외한 후에 다시 한번 사내 변호사를 제외하여 로펌 변호사만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했을 때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소형 로펌의 변호사는 외부 정보를 더 선호하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의 경우는 내부 정보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kri(2008)는 Ellis모델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Ellis모델을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 연구에 접목했으며, 어떻게 하면 이들의 행태를 잘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가를 물음으로써 정보시스템 설계를 위한 유용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했다. 학계에 있는 법조인의 전자 정보(electronic information) 자원 추구행태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하면서 그 논의·분석의 틀로 Ellis모델을 사용한 것이다. 학계에 소속되어 있는 법조인 27명(교수 1명, 강사 4명, 박사과정 학생 및 연구조교 3명, 법대 학부생 9명, 법대 대학원생 8명, 실무법학대학원생 2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와 자연스러운 관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내린 결론에서, 학계의 법조인들은 첫째, 주로 핵심적인 몇몇 전자 정보 자원을 주로 이용한다는 것과 둘째, 전자 정보를 이용하는 동안 Ellis모델들에서 발견되었던 '행태적 특징'과 유사한 행태적 특징을 법조인 역시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 전자 정보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은 정보자원·문헌·내용을 확인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전(前)단계와 직간접적으로 검색·선택·진행하는 후(後)단계로 나뉘며, 서베잉(surveying), 모니터링(monitoring), 탐색(searching), 브라우징(browsing), 이어찾기 (chaining), 추출(extracting) 등의 행태는 전(前)단계에 관련되고, 구분하기(distinguishing), 거르기(filtering), 선택(selecting), 추출(extracting), 갱신(updating), 기록정리(recording), 분석(analysing), 편집(editing) 등의 행태는 후(後)단계에 관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각 행위의 대상 즉, 이용 정보는 전자정보자원 자체(resource), 전자정보 내 정보자료(source), 문헌(document), 특정 문헌 내의 콘텐츠(content) 또는 그 복합체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자별 변호사 정부추구행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표 1>이다. Leckie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사무소의 규모'를 '조직측면의 상황'(organizational context)이라고 언급하면서 업무 역할이라는 요인 외의 하나의 변수로 이를 다루었다. Otike는 작은 규모의 변호사들에게는 전자 매체 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 해당 변호사들은 전자 매체 이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고, Wilkinson은 대형 로펌 변호사는 내부 정보를, 소규모 로펌 변호사는 외부 정보를 보다 선호한다고 하였다.

<표 1> 연구자별 변호사 정보추구행태 분석

학자 / 구분	Leckie	Otike	Cole & Kuhlthau	Kuhlthau & Tama	Wilkinson
요 인	업무 역할	업무 성격	–	–	–
변 수	경험, 사무소 규모, 개인의 태도, 변호사교육 등	경험, 사무소 규모	경험	–	사무소 규모
행 태	–	서면형태선호, 비공식커뮤니케이션 선호, 자료모음보유	–	서면형태선호, 자료모음보유	비공식커뮤니케이션 선호

한편 변호사들의 자료모음에 대한 언급은 Otike와 Kuhlthau가 했다. Otike는 대부분의 실무변호사들이 보다 빠른 정보참조를 위하여 '정보자료 모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교과서, 법령집, 정보보고서, 법학보고서, 개인파일, 시청자 자료, 강의 노트 등으로 변호사들은 사무실에 법률정보에 관한 일종의 개인 모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Kuhlthau 역시 변호사들은 사무소 내부 문서(internal office files)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문서는 이후 유사한 사건을 취급할 때 참조하기 위해 보관하며, 변호사들은 종료한 사건 관련 정보를 보관하는 일종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Ⅲ.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3.1 연구설계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설계는 <그림 2>과 같다.

분석대상 선정	21명의 변호사 선정 – 대형 로펌 변호사 7명 – 소형 로펌 변호사 7명 – 사내 변호사 7명
⇩	⇩
설문 조사	주요 업무, 정보요구 및 정보추구행태 조사 – 주요 업무 유형 및 정보요구 발생여부 조사 – 이용 정보 및 정보채널 조사 –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 및 검색 행태 조사
⇩	⇩
인터뷰 조사	10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수행 – 정보추구 맥락적 요소 파악 – 선호하는 이유와 장애요인 파악
⇩	⇩
수집 자료 분석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분석 – 선행연구 요인·변수 기반의 정보추구행태 분석 – 기존 정보추구행태모델 기반의 행태 특성 파악 –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선점 모색

<그림 2> 정보추구행태 분석의 연구설계

본 연구 설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연구 대상이 되는 변호사를 선정할 때 선행 연구의 정보추구행태 모델에서의 변수(경험, 사무소의 규모)

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둘째, 변호사의 업무와 정보요구와의 관계를 관찰하고자 했다. 셋째,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있어서 '추구대상이 되는 정보자체'인 "이용 정보"(선호 정보, 선택 정보)와 '추구결과'로서의 "정보채널"(정보를 입수하는 경로)의 개념을 분리하였다. 넷째,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서는 설문에서 파악하기 힘든 맥락적 요소 즉,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서의 이용 목적을 파악하고자 했다. 다섯째, 이를 통하여 기존 모델의 요인·변수가 오늘날 한국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도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2 연구대상자

변호사의 소속 기관으로서 가장 일반적 형태인, 로펌과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변호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정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온라인 환경과 디지털 정보자원에 거부감이 없는 X세대(1965년 ~ 1981년생) 중심의(김나원, 박지홍, 2009, p.439) 40대 전후 연령 변호사 중에서 전자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설문참여를 요청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했던 약30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대형 로펌, 소형 로펌, 일반 회사 소속의 변호사들을 각각 균등하게 선정한 결과, 7명씩 총 21명이 선정되었다. 특히 일정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서도 인터넷과 전자정보자원 검색에 거부감이 없고 활용이 가능한 연령을 고려하자 대부분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의 연령분포를 보였다.

현재 인터넷 온라인 환경과 디지털 자원 환경에서 기존 정보추구행태 모델에서의 요인·변수가 변호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변호사를 선정할 때 변수 중 두 가지, 즉 변호사 경력기간과 소속 기관 유형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선정하였다. 결국 대형 로펌 변호사 7명, 소형 로펌 변호사 7명, 사내 변호사 7명을 각각 선정했고, 경력 기간은 1년~5년(8명), 6년~10년(5명), 11년~15년(8명)으로 구분하여 가능한 고른 분포를 보이게 하였다. 이때 '사무소(로펌) 규모'의 기준은 '소속

변호사의 수(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로펌을 1인 변호사 로펌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변호사를 둔 로펌으로 정하였고, 대형 로펌은 변호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10대 로펌에 속하는 로펌으로 하였다. 성별 구성은 남자 10명과 여자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하여 기존 모델의 요인·변수가 오늘날 한국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도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했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구 분		응답자수
성별	남자	10명
	여자	11명
소속	소형 로펌	7명
	대형 로펌	7명
	일반 회사	7명
경력	1년 이상 – 5년 이하	8명
	6년 이상 – 10년 이하	5명
	11년 이상 – 15년 이하	8명
전문 분야 (중복응답)	민사	11명
	상사	9명
	형사	5명
	인권 및 행정	5명
	이혼	4명
	지적재산권	4명
	세무	2명
	보험	2명
	노무	2명
	금융	2명
	의료	1명
	건설	1명
	도산	1명

각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보면, 복수 응답을 허용한 가운데 민사(民事)업무를 주(主)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11명, 상사(商事)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9명, 형사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5명으로, 민사·상사·형사 세 분야가

가장 일반적인 업무 분야이다. 그 외에 인권 및 행정, 이혼, 지적재산권, 세무, 보험, 노무, 금융, 의료, 건설, 도산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표 2> 참조). 전문 분야를 공식화 하기 위하여 2010년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일정 사건 수 이상을 처리하면 두 분야까지 전문 분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수가 2014년 9월에 2만명을 넘어선데 비하여(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2014년 9월 기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58개 전문 분야에 전문 분야등록을 마친 변호사는 789명 정도로 아직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실무적으로도 전문 분야는 유동적일 수 있으며, 특히 민사, 상사, 형사의 경우는 일반법 분야로 변호사 누구도 담당 가능한 분야이므로 특별히 특화된 전문 분야를 둔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3.3 자료 수집

3.3.1 설문지 조사

설문지 구성을 위하여 각각 대학교, 로펌, 회사에 재직 중인 3명의 변호사에게 변호사의 전반적인 정보추구 행태에 대하여 2014년 9월 2일～3일에 면담을 실시하였다. 단, 이들 3명 변호사는 본 설문과 인터뷰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한승희와 이지연(2006)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별 탐색행태 분석"에서의 질문과 김나원과 박지홍(2009)의 "의사들의 의료정보추구행태에 관한 탐구"에서의 질문을 참조하고,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모델 중 Leckie모델(1996)과 Ellis모델(1989)을 기반으로 하여 19개 문항을 만들었다. 9월 24일～25일, 설문 문항구성 검토를 위하여 2명의 변호사(소형 로펌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 각1인)에게 "사전(事前)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였다. 파일럿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구 수정 및 용어 설명을 추가하여 최종본을 만들었다. 이렇게 확정된 설문지는 21명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통해 연구 목적과 설문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후, 2014년 10월 2일～3일 이

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2주간에 걸쳐 모든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8개의 설문을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 3>과 같이 구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개방형 문항을 두어 자유롭게 변호사들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3> 설문지 구성내용

항 목	설문 내용	문항번호
일반 사항	성별, 연령, 변호사 경력기간, 주(主)업무	1
법무실무사항	전문 분야	2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업무 유형	3
전체 정보 추구행태	정보요구가 발생하는 업무	4
	정보요구 발생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	5
	정보를 입수하는 주된 정보채널	6
법률정보 추구행태	주로 이용하는 법률정보	7
	주로 이용하는 외국법정보 콘텐츠	8
	법률정보들을 입수하는 주된 정보채널	9
	법률정보 검색 방식	10
법률정보DB 검색과정	선호하는 법률정보 DB	11
	법률정보DB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	12
	법률정보DB 사용빈도	13
	평균 법률정보DB 검색시간	14
	법률정보DB에서의 주된 접근점	15
	첫 번 검색 실패 시 취하는 행위	16
	법률정보DB 만족여부	17
	개선점 여부	18
	개선희망사항 서술	19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설문대상의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법무실무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된 업무를 알아보았다.

둘째, 변호사들의 법무실무와 정보요구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요구

발생 업무를 조사하였다.

셋째, 정보요구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이용 정보와 정보채널을 조사하였다.

넷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행태 및 검색 행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호하는 데이터베이스, 중요 요소, 이용 빈도, 이용 시간, 검색 방식, (검색) 접근점, 검색 과정에서의 조치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만족 정도와 개선점 그리고 불편사항이나 개선희망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3.3.2 인터뷰 조사

심층 인터뷰에서는 설문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변호사들의 이용 정보와 정보채널 선정에 있어서의 동기, 목적 등 추구행태의 맥락에서 파악되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2014년 11월 한 달 간 개방형 반구조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명당 최대 1시간30분 동안 진행하였다. 대면(對面) 인터뷰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 한해 전화 인터뷰를 시행했다. 심층 인터뷰 대상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4명, 소형 로펌 소속 변호사 3명 그리고 사내 변호사 3명, 총 10명으로 정하였다. 이중 특히 사내 변호사 3명의 구성은 사내 변호사 경험만 있는 변호사 1명, 대형 로펌 경험을 갖춘 사내 변호사 1명, 소형 로펌 경험을 갖춘 사내 변호사 1명으로 구성하였는데, 로펌 경험을 갖춘 사내 변호사들은 로펌에서의 경험과 사내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비교를 통한 응답이 가능했다.

3.3.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 조사단계에서의 설문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이용 빈도수, 선호도 등의 정도를 표시하는 순위 표시응답 및 다중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순위 응답인 경우는 순위별로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여 그 빈도에 따른 총점을 산출하여 비교하였고, 다중 응답인 경우는 그 빈도에 따라 총점을 산출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또한 각 응답에 대한 변호사의 생각 및 맥락을 살펴보기 위하여 변호사와의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실제 변호사의 주요 이용 및 검색 행태와 이러한 행태를 이끌어내는 맥락을 살펴보았다.

Ⅳ.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분석 결과

4.1 변호사의 주요 업무 및 정보요구

4.1.1 주요 업무

사전 파일럿 검사를 통해 변호사의 업무는 대표적으로 자문(諮問)과 송무(訟務)로 나뉘며, 자문 업무에는 계약서 검토·작성 뿐만 아니라 서면(書面) 자료가 오가는 의견서(意見書) 작성 업무 역시 포함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Leckie(1996)가 전문가의 '업무 역할'(work role)로 서비스제공자의 역할, 관리자·경영자의 역할, 조사자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과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했으며, 변호사의 '업무 역할'로는 작성 역할, 주장 역할, 협상 역할, 자문 역할, 행정 역할을 꼽았다. 반면 Otike(1999)는 '업무 유형'(type of work)으로 클라이언트 상담, 소송, 계약서 등 문서작성, 사무소 운영을 꼽았다. 본 연구는 Otike의 업무 유형을 기반으로 설문을 작성하였다. 첫째, 클라이언트 상담(이하 '상담'), 둘째, 계약서 작성·검토 등 자문(이하 '자문'), 셋째, 소송·중재·조정·협상과 같은 분쟁해결 수행업무(이하 '소송' 또는 '송무'), 넷째, 각종 논문·보고서·법학저널원고 등 작성, 다섯째, 강의로 분류하였다.

<표 4> 변호사의 주요 업무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소송	자문	자문	자문	소송	소송, 자문	소송
2위	상담	소송	소송	소송	자문, 상담	-	자문
3위	자문	상담	상담	상담	-	상담	상담

설문에 응답한 21명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주요 업무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표시하였고, 순위별로 가중치를 두어 분석한 결과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소송 업무, 자문 업무, 상담 업무 순이었다(참조 <표 4>). 이들이 변호사의 실무를 이루는 세 가지 주요 업무 유형이다. 그러나 설문 조사만으로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가 실제적으로 어떤 정보추구행태로 나타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하여 주요 업무와 정보추구행태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자 했다. 다음은 소송 업무과정 중 사실관계 확인 업무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답변자 1]
아무래도 제가 사내 변호사다보니까 소송 자체는 송무 쪽이 강한 외부로펌이 맡아서 하구요. 저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 외부로펌에 제공할 사실관계 정리를 제가 하죠. 사실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아는 데도 직원들이 정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 한 직원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경우는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사내 변호사인 제가 합니다.

[답변자 2]
사실 실제 소송에서는 법리문제보다는 사실관계 입증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관계가 의뢰인이 얘기하는 것과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 다를 때 그 입증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웬만하면 사실관계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는 모두 당사자들에게 받습니다. 결국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서라든가 증거들은 당사자들에게서 수집되기 때문이죠. 다만 사건에 따라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송무 업무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업무에 대한 사내 변호사와 소형 로펌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동일한 업무 유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정보요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내 변호사에게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정보요구가, 로펌 변호사에게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정보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내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인 소속 회사를 대신하여 마치 사건을 직접 의뢰한 클라이언트처럼 소송에서의 사실관계를 직접 수집하고 이를 소송대리인(로펌)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로펌변호사는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사내 변호사로부터 받은 사실관계를 참조하여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데 집중한다. 소송 업무로서 업무 유형은 서로 같으나 업무에서의 역할이 상이(相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Martin Mayer의 역할 구분에 대비해보자면 소송당사자의 역할을 하는 사내 변호사가 '주장 역할'(advocacy)을 한다면,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로펌변호사는 '자문 역할'(counseling)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1.2 정보요구

분석 결과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소송, 자문, 상담이었다. 이에 변호사가 실무상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많이 정보요구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현재 소유한 지식상태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식 격차가 가장 많이 인지되는 업무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대상 업무에는 Leckie가 언급한 작성, 주장, 협상, 자문 등과 같은 업무 역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변호사의 영업 및 행정업무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즉 상담, 자문, 소송 외에 사실관계 등의 증거 파악·수집, 각종 저술, 강의·발표, 영업, 행정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 결과, 정보요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변호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와 거의 일치했다. 변호사의 주요 업무가 송무(소송), 자문, 상담 순이었던 것과 동일하게 정보요구가 많이 발생하는 변호사의 업무 역시 송무, 자문, 상담의 순이었다. 결국, 변호사는 자신의 주요 업무에서 가장 많이 정보격차를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보요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송관련 문서 작성 업무를 정보요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라고 밝혔다(참조 <표 5>).

<표 5> 정보요구가 발생하는 변호사의 업무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소장작성	소장작성	소장작성, 자문	소장작성	소장작성, 자문	소장작성	소장작성
2위	자문	자문	-	자문	-	자문	자문
3위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그런데 변호사의 주요 업무를 묻는 질문(참조 <표 4>)과 정보가 요구되는 업무를 묻는 질문(참조 <표 5>)에는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즉 '주요 업무'를 묻는 설문에서는 소송 수행 즉, 송무(訟務)를 한 가지 업무 유형으로 다룬데 반해, '정보가 요구되는 업무'를 질문할 때는 송무를 '소장 등의 작성 업무' 유형과 '사실관계 확인 업무' 유형, 두 가지 업무 유형으로 분리하였다. 이는 송무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증거를 파악·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소장 작성업무를 할 때와는 상이(相異)한 정보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업무 유형이 서로 다른 경우, 정보요구 역시 달라진다. 소장 작성업무가 주로 '법률문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사실관계 확인 업무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실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의료소송의 경우는 의료 행위나 의무기록에 대한 지식, 영업 비밀에 대한 소송은 비밀관리 자체를 하였는지의 사실 파악 등이 있을 수 있다.

업무 유형은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각각의 업무 유형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보요구 형태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답변자 1]
클라이언트를 상담할 때 필요한 정보요구라면 일단 법률이나 판례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던 법률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간단한 것은 의뢰인이 있는 자리에서 검색하구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먼저 검토한 후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답변자 2]
계약서 작성 시에 필요한 정보요구는 기존에 제가 수행했던 자료 중에서 비슷한 내용의 계약이 있으면 그것을 많이 참조하고, 로앤비에도 계약서 포맷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보죠.

[답변자 3]
사실관계 증거파악에 필요한 정보요구는 사실관계와 관련된 서류들을 모으고 해당된 물건들을 직접 보기도 합니다.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거죠.

[답변자 4]
소송에 필요한 정보는 판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주장을 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판례를 찾죠.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판시를 하고 있다라고 쓰고 뒤에 참고자료로 판례를 뽑아서 첨부하기도 해요.

이들 인터뷰에 의하면 소송, 자문, 상담 세 가지 업무 유형 모두 법률·판례 등의 법률정보에 대한 정보요구가 가장 우선되었다. 그 외에 전문서, 주석·주해에 대한 정보요구가 있고, 자문 중 계약서 검토·작성에 있어서는 기존 계약서 내용을 많이 참조하였다.

4.2 법률정보추구행태 분석 결과

4.2.1 실무상 이용하는 전체 정보 분석

1) 이용 정보

변호사는 주요 업무에서 항상 정보요구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정보요구가 있을 때 이용하는 전체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변호사가 실무에서 정보요구가 있을 때 '요구되는 정보자체' 즉,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 선호하는 정보, 선택한 콘텐츠(이하 '이용 정보')를 조사한 것이다. 이는

정보추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정보의 입수경로 즉, 정보채널의 선정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이용 정보' 행태와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정보채널' 행태를 구별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Wilkinson(2001)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용 정보의 선택과 정보채널의 선정을 구분하였다. 결국 정보추구 과정은 '이용 정보'를 선택하고, 입수경로를 선정하여 입수한 후 정보의 적합성을 판정하고 실제 이용하는 행위 전체를 모두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변호사의 '이용 정보'를 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첫째는 변호사가 실무 수행 중에 이용하는 전체 정보이고, 둘째는 그중에서 특별히 법률정보에 관한 것이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무(法務)에 속하는 실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순전히 법률관계와 관련된 법률정보만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무에서 변호사가 이용하는 전체 정보'(참조 <표 6>)는 변호사의 실무 중 법무에 필요한 정보 뿐 아니라 행정업무, 영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반면, '실무에서 변호사가 이용하는 법률정보'(참조 <표 8>)는 변호사 업무의 핵심인 법률정보추구행태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법률정보를 조사한 것이다.

<표 6> 실무에서 변호사가 이용하는 전체 정보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법령·판례	법령·판례	법령·판례	법령·판례	법령·판례	법령·판례	법령·판례
2위	전문도서	전문도서	전문도서	내부문서	전문도서	전문도서	전문도서
3위	내부문서	논문·저널	내부문서	전문도서	논문·저널	내부문서	내부문서
4위	논문·저널	내부문서	논문·저널	논문·저널	내부문서	논문·저널	논문·저널
5위	전문가조언	전문가조언	동향·뉴스	동향·뉴스	동향·뉴스	전문가조언	전문가조언
6위	동향·뉴스	동향·뉴스	전문가조언	전문가조언	전문가조언	동향·뉴스	동향·뉴스

‘실무에서 변호사가 이용하는 전체 정보’의 예시로는 법령 및 판례, 내부문서(기존 계약서 및 기존 소송서류), 전문가(선후배·동료)의 조언·자문, 전문서(교과서 등), 논문·보고서·저널, 그리고 최신 동향정보·뉴스를 들었다.

<표 6>에서 보듯이 변호사는 실무를 위하여 법령·판례 등 역시 법률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문서와 내부문서의 순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논문, 전문가 조언, 뉴스 등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이용도를 보였다. 다음 인터뷰에 따르면, 논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설(學說)들은 실무를 하는 변호사에게는 법령·판례나 전문서 보다는 의미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학계에 있는 법학자들과 실무를 하는 변호사 간에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답변자 1]
> 법 원리를 이해하기위해서는 교과서나 주해를 봅니다. 교과서와 주해는 자주 보지만 논문을 검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논문 검색의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한 적은 아직 없어요. 이는 법률 조문, 소송에 유리한 판례, 사실관계 적시 등으로 대부분 마무리되고 학설 다툼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판결은 기존 판례를 따라갑니다. 다만 판례 변경을 위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논문검색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 [답변자 2]
> 전문도서라면 교과서를 참조합니다. 교과서 외의 전문서라면 주석·주해인데, 전문서말고 논문의 경우는 어쩌다 검색하다 논문이 찾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정도 논문을 참조하죠.

또한 <표 6>에서 주목할 부분은 선후배·동료 등 전문가의 조언, 즉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역시 오늘날 한국의 변호사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용되는 정보는 아니라는 점이다. Otike를 비롯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변호사에게는 동료 전문가가 중요한 정보 입수경로이자 그들로부터 나오는 정보 자체도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하지만 이번 설문 및 인터뷰 결과 한국의 변호사들은 동료에게서 얻는 정보 즉,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도가 그만큼 크지는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 보다는 오히려 '공식적 정보'(formal information)인 법령·판례나 전문서 등의 문헌 정보들에 대한 정보요구가 더 우선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특성에 있어서 기존 선행 연구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인데 향후 이러한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이용 목적

실무에서 변호사가 이용하는 전체 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소를 파악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설문 조사와 더불어 심층 인터뷰가 이루어진 목적 역시 단순히 한국의 변호사들이 기존 정보추구모델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가라는 질문에서 더 나아가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의 또다른 맥락적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Leckie는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와 관련하여 특정 변호사가 정보로서 요구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변호사는 실무에 초점을 맞춰 특정 법영역으로 특화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전문서적은 초임 변호사때는 완전히 기본 서적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경력이 쌓이게 되면 이제는 기본 서적을 볼 때가 아니에요. 주로 전문적으로 특화된 분야의 서적을 보고 이해합니다.

인터뷰에서 파악된 내용은 변호사가 전문서를 볼 때 초임 변호사의 경우에는 기본 서적을 보지만 경력이 쌓이게 되면 전문적인 분야에 특화된 서적을 본다는 점이다. 여기서 하나의 맥락적 요소를 뽑는다면 전문가로서의 변호사는 단지 경력이나 경험이 쌓인다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전문성 추구'를 '정보 이용 목적'으로 하는 행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 특성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정보추구행태에서 보다 잘 파악되었다.

[답변자 1]
초임변호사인 경우는 내가 작성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선배들에게 묻게 되는데 만약 대형로펌의 경우라면 아예 해당 작성서류에 대해 선배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요. 검사나 결제식으로요. 일단 초임의 경우 자기 작성을 한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선배들의 의견을 듣게 되죠. 하지만 경력이 쌓이면 관련 분야가 일반 분야가 아닌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되는 전문 분야의 변호사 즉, 특허나 그런 특화된 분야에서 혹시나 내가 놓치는 것이 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게 되죠.

[답변자 2]
물을 때는 주로 가까운 친구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요새는 경력이 쌓이면서 물어보는 횟수가 많이 없어요. 옛날에 변호사 초반기에는 엄청나게 물어봤죠. 요즘은 전문 분야 소송 경험이 있던 변호사나 전문 분야 경험이 있는 연수원 동기들에게 물어봐요. 서로 경력이 쌓였으니까 전문 분야의 경우에 물어봐요. 제가 평소 많이 안하던 분야는 잘 모르니까 그 전문 분야는 물어보게 되죠.

[답변자 3]
파트너 변호사가 된 지금은 다른 선배 변호사한테 주로 소송 경험을 묻습니다. 솔직히는 “경험한 바로는 그 재판부 판사님 성품이 어때요?” 기일연기는 잘해주나요?”라는 등 이미 경험한 선배 변호사의 실질적인 의견을 묻는 거죠. 지식이나 법적인 문제보다는 실무적인 노하우를 묻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은 그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기는 했으나 맥락적 요소인 전문성 추구라는 이용 목적이 어떻게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주는 지를 보여준다. 대형 로펌에서는 로펌 운영 시스템상 초임 변호사의 전반적인 수행 실무 산출물 대부분을 선배 변호사가 다시 검토해주는 재검토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는 초임 변호사에 의해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쌓일수록 선배 변호사의 조언이나 검토를 받는 경우는 드물어진다. 그

리고 조언의 내용, 즉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는 정보의 내용 자체도 초임 변호사 때는 작성한 문서의 법률 전반적 내용 전체를 묻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특정 전문분야, 특히 경험을 갖춘 변호사라도 기존에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문소송 형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할 때의 유의사항을 묻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아가 대형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가 되면 수행해보지 못한 소송의 형태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소송 수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묻기보다는 동료 변호사의 주관적인 의견만을 묻기도 한다.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점은 변호사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추가하는 행태가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전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정보요구로 바뀌어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태 변화는 맥락적 요소로서의 전문성 추구라는 이용 목적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경험'이라는 변수와 구별되는데, 단지 경험을 기준으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행태가 변화한다기보다는 같은 경험을 가진 경우라도 보다 전문적인 분야와 관련되어 선후배나 동료의 자문을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추구'라는 정보 이용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4.2.2 전체 정보 입수경로 분석

다음으로 변호사가 원하는 정보의 입수경로 즉, 정보채널 또는 정보전달매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정보 입수경로'의 예시 문항으로는 본인(소장), 전문가(선후배 및 동료 등), 소속기관 자료실, 외부기관(도서관·연구소·정보서비스 기관 등), 로앤비 등 온라인 법률정보DB, 인터넷 검색엔진 및 SNS 그리고 각종 학회·세미나·포럼·컨퍼런스를 제시하였다. 설문 결과, 변호사들은 로앤비(LawnB) 등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 입수 방식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어서 소속기관 자료실, 외부 기관, 본인 소장 자료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조 <표 7>).

<표 7> 변호사 실무관련 전체 정보 입수경로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법률정보 DB	법률정보 DB	법률정보 DB	법률정보 DB	법률정보 DB	법률정보 DB	법률정보 DB
2위	외부기관, 본인소장	소속자료실	소속자료실, 인터넷엔진	인터넷엔진	외부기관	본인소장	소속자료실
3위	-	본인소장	-	소속자료실	본인소장	소속자료실	본인소장

정보채널 즉 정보입수경로를 분석한 자료는 정보추구행태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설문 결과는 한국의 변호사들이 로앤비(LawnB) 등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행태적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앞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선행 연구의 행태 특성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말 Otike는 변호사 등이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 중 가장 우선되는 것이 동료와의 접촉, 그 다음이 법학저널, 다음이 세미나 등이며, 전자 매체는 그 중 마지막 수단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전자정보원을 통한 입수가 가장 주된 경로이며, 이는 디지털 정보 환경에의 변화로 인하여 도출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채널을 통한 행태 분석에 있어서 기존 연구와 상반된 분석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변수들에 의해 영향 받는 행태 중 일부는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 첫째로 정보추구행태 모델 변수 중 '사무소 규모'에 의한 영향은 현재에도 유지된다. "소속기관 자료실"은 사실상 소형 로펌에서는 거의 갖추고 있지 않고 대형 로펌이나 일반 회사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로 소속기관 자료실의 이용 행태 역시 사무소 규모라는 변수에 따른 정보추구 행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의 경험' 역시 현재에도 적용되고 유지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 변수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행태 특성은 바로 '변호사의 소장 자료 검색 행태'이다. 설문 결과를 보면(참조 <표 7>), 경험이 많은 11년 ~ 15년차인 변호사들은 소속기관이나 외부기관 자료를 찾는 방법보다 본인이 소장한 자료를 더 많이 찾아보고 있다. 다음은 경력 11년 ~ 15년차 변호사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답변자 1]
개인 소장 자료라면 첫째는 소송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소송할 때 입수되는 자료들입니다. 직접 수행했던 소송 진행 자료도 있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자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자가 있죠. 예를 들면 주석서라든지 주해서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크해놓은 자료도 있죠. 소송 수행하면서 찾았던 판례라든지. 그리고 법률신문보면서 스크랩해놓은 자료도 있죠. 관련 사건이나 소송, 자문하면서 찾아놓은 자료 외에도 상대방 소장 자료에서 얻은 자료라든지 사실조회하면서 얻게 되는 자료 등도 체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바뀐 사항이 있는지는 다시 확인해야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경력이 쌓이다 보면 소장하게 되는 자료가 많아지고 그걸 참조하게 됩니다.

[답변자 2]
교과서, 주석서들도 저는 제가 필요한 자료를 제가 직접 사서 봐요. 나중에 다시 참조하기 위해서 표시를 내놓거든요. 제가 했었던 기존 계약서나 소송 자료도 외장 하드에 각 사건 당사자 이름으로 각각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해요. 제가 만 11년을 했는데요, 경력이 지금쯤 되면 해본 사건이 많아요. 내 것에서 검토하면 거의 다 나와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뒤져보면 나오는 거죠. 교과서, 주석서, 기존 계약서류, 기존에 제가 했던 답변서·준비서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요. 옛날처럼 맨땅에 헤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다보니 사실 요즘은 이런 폴더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정렬해야 하는지가 오히려 고민 중인거죠.

이와 같이 인터뷰에서 보면, 변호사 경력이 쌓일수록 소속 자료실이나 외부

도서관 보다는 본인이 직접 자료를 구입하여 소장하거나, 본인이 직접 검토하여 작성한 자료 모음을 더 많이 참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Leckie, Otike, Cole & Kuhlthau) 결과에서의 변호사의 경험에 따른 행태 차이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일종의 변호사의 개인 자료 모음에 해당될 수 있는데, 역시 기존 선행연구(Otike, Kuhlthau & Tama)에서 언급한 바 있다. 결국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자료 모음을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3 실무상 이용하는 법률정보 분석

1) 국내법

변호사 실무에서 가장 정보요구가 많이 발생하는 업무는 주된 업무 중에서도 특히 소송서류 작성 업무였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요구 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 콘텐츠는 법령 및 판례 즉, 법률정보였다. 이에 이들 개별 법률정보 중에도 특히 많이 이용하는 법률정보에 대하여 설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실무 변호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법률정보는 법령(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약, 조례 등)이었다. 그 다음은 판례(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 법학관련 전문서(교과서 등), 기존 계약서·소송 서류, 법학관련 학술 논문, 법학관련 동향 정보·뉴스,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각종 법무 서류 양식(form) 순이었다(참조 <표 8>).

법학에서 법시스템을 구분할 때 성문법(成文法) 중심의 대륙법계 국가와 불문법(不文法) 중심의 영미법계 국가로 구분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구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계 국가에 속한다. 법령 등에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 법시스템에서는 성문법이 대표적인 1차 법원(法源)이 되고 반면 판사에 의한 판결 중심으로 발달되어온 영미법계 법시스템에서는 판례가 대표적인 1차 법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8> 실무에서 변호사가 이용하는 법률정보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판례	법령	법령	법령	판례	법령	법령
2위	법령	판례	전문도서	전문도서	법령	판례	판례
3위	전문도서	전문도서	판례	판례, 기존계약서	전문도서	전문도서	전문도서
4위	기존계약서	기존계약서, 법학논문	기존계약서	-	기존계약서	기존계약서	기존계약서
5위	법학논문	-	법학논문	법학논문	법학논문	법학논문, 헌법재판소 결정	법학논문
6위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법무동향	법무양식	법무동향	-	법무동향
7위	법무동향, 법무양식	법무동향	법무양식	법무동향	헌법재판소 결정	법무양식	헌법재판소 결정, 법무양식
8위	-	법무양식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법무양식	법무동향	-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례구속(先例拘俗)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판례가 후판례를 반드시 구속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실제로는 대부분 후판례는 선판례를 따르지만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에 대한 정보요구가 판례보다 많다고 보여 진다.

[답변자 1]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검색하는 빈도가 많지 않아요. 위헌재판과 관련된 사건자체가 많지 않고,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죠. 그런 법률이 쟁점이 되는 사건자체가 많지 않다보니..... 하지만 인권변호사나 뭐 그런 분들은 많겠죠.

[답변자 2]
우리 회사의 경우는 대부분 관련 사안이 민사와 상사 쪽이다 보니 헌법재판소 결정은 거의 안봅니다. 아마 행정소송을 주로 하는 분들이나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 정도만 볼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정보요구가 낮은 이유는 위와 같은 인터뷰를 통하여 파악되었다.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가 아닌 한 일반적인 변호사 소송 실무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 소송의 수행이 드물기 때문이다.

2) 외국법

우리나라 법률정보가 아닌, 외국 법률정보에 있어서의 정보요구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표 9>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률정보 이용 행태와 유사하게 외국법에 대해서도 법령과 판례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지만 아무래도 법령보다는 판례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법률정보 이용 행태와는 달리 외국법에 대해서는 동향정보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9> 실무에서 변호사가 이용하는 외국법정보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거의 검색 하지 않음	외국판례	외국법령	거의 검색 하지 않음	외국판례	외국판례	외국판례
2위	외국판례	외국법령	서적·논문	외국법령	동향정보	외국법령	외국법령
3위	동향정보	서적·논문	외국판례	실무양식	서적·논문	서적·논문	거의 검색 하지 않음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소형 로펌의 변호사가 외국 법률정보를 검색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다. 경력이 낮은 변호사의 경우는 경험 부족이나 수요 미비로 인하여 아직 외국 법률정보요구가 드물다고 예상할 수 있음에 반하여, 소형 로펌에서 외국 법률정보 검색이 드물다는 결과는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곧, '사무소의 규모'(소속변호사수 기준)라는 변수가 영향을 준 결과,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형 로펌 변호사와는 달리 동일한 로펌 형태인데도 대형 로펌 변호사의 경우는 설문에 참여한 7명 전원의 외국법, 특히 외국 판례에 대한 이용 순위가 높았다. 따라서 대형 로펌에서는 외국법에 대한 정보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소형 로펌의 경우는 외국법에 대한 정보 수요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를 통하여 파악된 바로는 대형 로펌 또는 기업의 경우 보통 기관·법인·일반 회사가 클라이언트인 경우가 많았고, 소형 로펌의 경우는 개인 클라이언트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과의 계약 체결이나 분쟁 발생은 개인보다는 기관·법인·일반 회사가 클라이언트인 경우가 보다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2.4 법률정보 입수경로 분석

지금까지 변호사가 실무에서 행하는 정보추구과정에서의 업무, 정보요구, 가장 많이 선택한 '이용 정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입수경로', 그리고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법률정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런데 업무가 법무(法務)인 변호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결국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법률정보를 얻는 정보채널' 즉, 법률정보의 입수경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로서 주장되었던 서면(書面) 형태 정보 선호,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선호, 내부 정보 선호 등이 사실상 변호사의 법률정보 입수경로의 선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입수경로의 예시로는 로앤비(LawnB) 등 전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글 검색엔진, 네이버·다음·네이트 등의 국내 검색 엔진, 문헌자료(전문서, 논문, 보고서, 저널 등), 전문가의 자문(선후배 및 동료 변호사 등), 기관 내부 자료 및 개인 자료의 이용,

(외부 제공처로부터의) 메일링 서비스 등이 제시되었다.

<표 10> 변호사의 법률정보 입수경로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법률정보 DB	법률정보 DB	법률정보 DB	법률정보 DB	법률정보 DB	법률정보 DB	법률정보 DB
2위	문헌자료	기관내부·개인자료, 문헌자료	문헌자료	문헌자료	문헌자료	문헌자료	문헌자료
3위	국내검색 엔진	-	국내검색 엔진	국내검색 엔진	기관내부·개인자료	기관내부·개인자료	국내검색 엔진

<표 10>의 변호사 법률정보 입수경로 분석에서 보여 지는 첫 번째 행태는 변호사가 서면 형태의 문헌 정보가 아닌, 인터넷 상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정보원(情報源)을 통한 법률정보 입수를 가장 많이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선호 경향은 일종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의 경력이나 사무소 규모에도 영향 받지 않고 전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표 7>에서도 언급 바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들과는 분명 상반된 행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성은 '내부 정보'(internal information)와 '외부 정보'(external information) 선호 경향과 관련된 특성이다. Wilkinson(2001)의 분석 결과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에 대한 선호 경향은 사무소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즉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경우 내부 정보를 더 선호하는 반면, 소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경우는 외부 정보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때 내부 정보는 로펌의 동료나 파트너, 사무소 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 분석내용과 유사한 특성이 법률정보 입수경로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는데,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다른 소속 기관의 변호사들에 비해 기관 내부 자료 또는 개인 작성 자료를 보다 많이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기관 내부 자료들은 대형 로펌의 물리적 자료실 공간에 있는 자료라기보다는 기관의 전자정보망인 인트

라넷 내 온라인 자료실에 전자자원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 [답변자 1]
> 대형 로펌의 경우는 자료실도 있고 기존 기록을 보존하는 곳도 있어요. 지금 회사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냥 도서관에 가긴 하지만 도서관은 전문적인 도서보다는 일반적인 도서가 많아서 자주 안가게 되고 그냥 로앤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 대형 로펌의 문서보관 서버에는 비공개의 각종 계약관련 정보가 많아요. 절대 외부로 공개하지 않죠. 금융계약도 각 형태별로 계약서가 많아요.

> [답변자 2]
> 저희 로펌은 대형 로펌이다 보니 내부 자료실은 도서관처럼 되어 있어 있습니다. 주석서나 교과서 등은 있지만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진 않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내부 자료실보다는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컴퓨터로 찾습니다. 직원만 볼 수 있는 내부 문서들은 내부 인터넷 망에서 아이디치고 들어가면 어느 변호사가 무슨 사건을 했는지와 그 자료들이 다 나오니까요.

이와 같이 온라인 공간의 자료들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내부 직원이나 변호사들에게만 공개된다고 하므로 외부에서 얻을 수 없는 내부 법률정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주목되는 행태 특성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국내 검색엔진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소형 로펌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 그리고 경험이 적은 경력 1년 ~ 5년차의 변호사들에게 많았다는 점이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과 함께 대중적이고 자연어 검색도 편하며 통합검색도 가능한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법률정보를 찾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나, 경력에 상관없이 소형 로펌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 역시 인터넷 검색 엔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된 점은 일부 사내 변호사와 일부 소형 로펌 변호사들이 유료로 제공되는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로앤비(LawnB)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인터뷰에 응한 3명의 사내 변호사 중 2명이, 3명의 소형 로펌 변호사

중 2명이 로앤비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변호사들이 밝힌 바로는 로앤비가 무료서비스가 아닌 유료서비스이기 때문인 점도 한 몫을 했다. 데이터의 효용성 등을 고려해볼 때 적정한 가입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적정성'이란 이용자 측면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크므로 소형 로펌 변호사나 사내 변호사는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답변자 1]
로앤비는 정식 등록을 안했어요. 연회비가 몇 만원인데 서버 지원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컴퓨터 한 대밖에 설치가 안되고해서 가입을 안했어요. 그런데 로앤비는 로앤비앱으로는 판례가 좀 검색되더라구요. 도서관은 좀 너무 멀구요.

[답변자 2]
로앤비 자료는 유료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근범위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나 대법원을 이용하죠.

[답변자 3]
일단 회사에서 로앤비에 가입해있지 않아서 로앤비를 안씁니다. 제 업무가 주로 계약서 검토다 보니까 로앤비보다 그냥 급할 땐 네이버에서 찾습니다.

이를 통해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소로서, 비용절감 등의 "경제성 추구"라는 '이용 목적'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구독 또는 가입 비용을 이유로 무료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더 이용하기도 하는 등, 이른바 '경제성 측면'라는 맥락상의 이용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로소 소형 로펌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가 인터넷 검색엔진을 보다 많이 이용하게 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행태 특성은 '법률정보 대리조사'에 관한 것이다. 변호사가 자신의 정보요구에 대하여 스스로 정보추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 즉 일종의 '법률정보 대리조사'는 위의 입수경로들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지만

입수경로에서의 변호사 정보추구행태인 것은 분명하다. Leckie에 의하면 대형 로펌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조사의 일부나 전부를 로펌 내 다른 인력 자원에게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고 소형 로펌 변호사는 법률조사를 스스로 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사무소 규모'도 변호사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라고 파악한 바 있다. Otike 역시 훈련 변호사나 사무소 검색 직원에게 정보 검색을 요청하는 것 역시 변호사 정보추구행태의 하나로 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이러한 행태 특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대형 로펌이니까 직원도 있고 1~2년차 변호사도 있습니다. 준비서면의 1차 초안은 1~2년차 변호사들에게 리서치를 맡깁니다. 판례, 관련 법령, 주석서, 교과서 등을 찾게 하죠. 제가 봤을 때 리서치 결과가 미진한 경우에만 제가 다시 직접 하죠. 직원도 있긴 한데 요즘은 변호사들이 많아져서 1~2년차 변호사에게 부탁합니다. 초임이긴 하지만 잘 찾는 변호사의 경우는 결과가 대단히 만족스럽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초임 변호사별로도 실력차가 큽니다. 이렇게 초안 검색을 맡기게 되는 이유는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소송사건별로 파트너변호사 1명, 지원 변호사 1~2명에 비서 1명 이렇게 각각 배정됩니다. 그렇다보니 지원 변호사로 배정된 초임 변호사에게 1차 초안을 맡기게 되죠. 비서에게는 보통 행정업무만을 맡깁니다.

인터뷰를 통하여 대형 로펌 변호사, 그 중에서도 파트너급 변호사는 훈련 변호사나 초임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 등에 필요한 정보 검색을 대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형 로펌 변호사의 경우는 정보 검색을 대신 하도록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 역시 사무소 규모라는 변수에 영향을 받는 정보추구행태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3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4.3.1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행태 분석

1) 법률정보DB 선택 및 이용행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변호사가 실무를 할 때는 소송, 자문, 상담 등 그들의 주요 업무에서 가장 많은 정보요구가 발생하고 그러한 정보요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는 법률정보, 그 중에서도 법령이며, 입수경로로는 온라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변호사들에게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실무에 있어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 빈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변호사 21명 중 17명의 변호사가 매일 검색한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변호사가 매일매일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한 회 일정 법률정보 획득에 들이는 평균 검색시간'에 대한 설문에서는 각각 10명의 변호사가 '30분 이내'이거나 '1시간 ~ 2시간'을 사용한다고 밝혔고, '2시간 ~ 4시간'을 사용한다는 변호사도 1명이 있었다.

이러한 행태 특성은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의 실무에 있어서 일정 요인에 의하여 변호사의 업무가 크게 변화했다거나 또는 변수(경험, 사무소 규모, 교육, 전문 분야, 개인적 태도 등)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디지털 정보환경의 급격한 발달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자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해졌다는 점에서 변호사들의 행태 변화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더 이상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판례를 확인하거나, 서적으로 발간된 판례집을 들추거나, 일일이 가제된 종이 관보를 넘기거나 법령집을 구비할 이유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변호사들의 정보추구행태에 있어서 시스템과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변호사들은 실무에 필요한 전자정보자원을 얻을 수 있는 정보채널로서 그리고 정보원(情報源)으로서 온라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많이 이용하는 정보원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예시로서 로앤비(LawnB), 로앤비 이외의 상업용DB,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입법지원센터 입법예고, 전자관보를 제시하였다.

<표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변호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3개 데이터베이스에 한정되어 있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인 로앤비(http://www.lawnb.com/)였고, 다음으로 정부기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가 뒤를 이었다. 그 외의 데이터베이스로는 21명의 설문대상자 중에서 7명의 변호사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전자관보는 단 한명의 변호사도 참조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변호사가 주로 이용하는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로앤비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로앤비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로앤비
2위	로앤비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로앤비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로앤비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3위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로앤비	-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현재 상업용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앤비(LawnB)인데, 기존에는 NetLaw(www.netlaw.co.kr), KOLIS종합법률정보

(http://www.kolis.co.kr/) 등이 있었으나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예스로(YesLaw) 정도가 유지되는 실정이나 설문에 응한 변호사 중에서는 이를 이용한다고 답변한 변호사는 없었다. 결국 로앤비는 국내 거의 유일한 상업용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이면서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파악되었다.

> [답변자 1]
> 로앤비는 거의 하급심판례를 찾기 위해서 이용해요. 다른 자료의 경우 법률은 법제처 것을 보고요,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보죠. 대법원에는 하급심 판례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대충 나와요.

> [답변자 2]
> 로앤비는 확실히 이용자 중심이라서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결과 내 재검색이 안되는 것은 불편합니다. 대법원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판례는 있는데 너무 공개되지 않는 하급심 판례가 많아서 저의 경우는 그다지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법령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법률 조문 확인보다는 연혁 법률과 입법 취지를 볼 때 사용하죠. 입법할 때 해당기관 사내 변호사에게 관련 법률 입법할 때 입법의견을 묻기도 하거든요. 입법의견 낼 때 입법취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인터뷰를 통하여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로앤비의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였다. 유료서비스여서인지 현재로서는 검색편리함이나 보유 정보자원에 있어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비하여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는 인터뷰에 응한 변호사들 모두 동의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결과 내 재검색과 같은 기술적 향상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바 즉, 변호사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상 요소의 하나로 비용절감 또는 경제성 추구라는 '이용 목적'이 포함된다는 것은,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무료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역시 그 서비스 개선과 법률정보 제공 확대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2) 법률정보DB 선택에 있어서의 중요 요소

전문분야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검색하는 경우, 정보자원으로서의 법률정보와 그 정보원으로서의 데이터데이스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속성은 일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를 수 있다. 이 같이 요구되는 속성들을 파악해 본 결과, 변호사들은 '정확성'(accuracy)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정보추구활동을 설명한 Case(2012) 연구에서도 분명하게 언급되었던 요소이다. 그 다음으로는 최신성과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참조 <표 12>).

<표 12>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중요 요소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2위	신뢰성	검색편리성	최신성	최신성	신뢰성	최신성	최신성
3위	최신성	전문성	검색편리성	검색편리성	최신성, 전문성, 검색편리성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이는 앞서 2.2에서 언급되었던 1차적 법률정보의 특성 즉, 정확성, 정보 간 연관성, 최신성 등을 정보이용자인 변호사가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선택 요소에 그대로 반영시킨 결과로 보인다. 즉,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자원이 1차적 법률정보라는 점에서 결국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즉,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은 1차적 법률정보의 특성을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3.2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행태 분석

1) 검색행태

Ellis의 정보탐색과정(ISP)모델(1989)을 법조인의 정보추구과정 중의 추구행태에 접목시킨 연구를 한 학자가 Makri(2008)이다. 그는 법조인의 전자정보원 검색 행태를 관찰하면서, Ellis의 정보탐색과정(ISP) 모델의 각 단계별 행태가 법조인의 전자정보원 검색 행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Ellis와 Makri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첫째, 시작하기에 해당되는 서베잉(surveying), 둘째, 참고자료를 따라가며 찾아보는 이어찾기 방식의 체인잉(chaining), 셋째, 정기적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모니터링(monitering), 넷째 훑어보는 브라우징(browsing), 이 네 가지의 Ellis모델에 더불어 Makri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다섯째, 직접 지시적으로 검색하는 “탐색”(searching)을 기반으로 예시를 작성하였으며, 이들 중 변호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검색행태를 조사하였다.

<표 13> 법률정보 검색행태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탐색	탐색	탐색	탐색	탐색	탐색	탐색
2위	체인잉	서베잉	체인잉	브라우징	체인잉	체인잉	체인잉
3위	서베잉	체인잉	브라우징, 모니터링	체인잉, 서베잉, 모니터링	브라우징	서베잉	브라우징

설문에 응한 21명의 변호사는 모두 ‘탐색’(searching)이 가장 주된 검색 행태라고 답하였다. 찾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중요단어(키워드)를 검색어로 사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판례번호와 같이 형식화되어 조합된 검색어를 직접

지시적으로 입력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인 '탐색'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검색 행태는 연결점이 되는 정보를 따라가면서 이어찾기를 수행하는 "체인잉"이었다. 체인잉은 인용이나 자료 간의 참고용 연결점 등을 따라가면서 검색하는 것인데 이는 Makri연구에서도 변호사의 일반적인 검색 행태로서 인식된 바 있다. 법률정보 검색에 있어서 체인잉의 검색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2.2에서 언급한 1차적 법률정보의 특성 중에서 "정보 간 연관성"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검색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법률(法律)이 동떨어진 단독 정보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제정(制定)·개정(改正)·폐지(廢止) 등 일련의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전·후·상·하의 체계나 적용 범위 구분 등에 따라 여러 다른 법률정보들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많이 행해지는 검색 방식은 '브라우징'이다. 브라우징은 잠재적 관심 분야에서의 '반(半)지시적(semi-directed) 검색'이라고 할 수 있다. Makri는 정보자원 브라우징, 출처 브라우징, 문헌 브라우징, 콘텐츠 브라우징 등 브라우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한국의 변호사들도 탐색과 체인잉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이용한 검색 방식으로 브라우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조 <표 13>).

2) 접근점

분석 결과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방식은 '탐색'(searching)이었다. 탐색은 중요 단어나 핵심어 즉 키워드 또는 일정 조합의 검색어를 정보에의 접근점으로 하여 지시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검색 방식이다. 설문을 통하여 변호사의 정보추구과정 중 탐색 방식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접근점을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변호사는 중요단어(키워드), 법령명 그리고 판례번호 이 세 가지를 접근점으로 하여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참조 <표 14>).

<표 14>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접근점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중요단어	중요단어	중요단어	중요단어	중요단어	중요단어	중요단어
2위	법령명	법령명, 판례번호	법령명	법령명	판례번호	법령명	법령명
3위	판례번호	-	판례번호	판례번호	법령명	판례번호	판례번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접근점 중에서 법률정보의 특성을 나타내는 접근점이라면 중요 단어나 법령명 보다는 판례번호가 그것이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접근점으로서 서명, 저자, 발행처, 주제어 등이 이용되는데 반해,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판례에 붙는 판례번호를 접근점으로 하는 특징을 갖는데, 이는 법 분야의 일정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조합된 검색어로서, <표 12>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중요 요소인 전문성 및 검색편리성과도 연관된다.

결과적으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있어서 접근점은 중요단어(키워드), 법령명, 판례번호 이 세 가지에 거의 한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검색편리성 향상을 위해서는 법률정보 접근점 개발에 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검색 실패 후 검색 방식

첫 번째 검색에서 검색 결과로서 적합한 또는 요구되는 정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 즉, 첫 번째 검색에서 실패했을 때 변호사가 다음으로 취하는 행위를 조사하였다. Kuhlthau모델(1991)에서 그는 정보 이용자의 정보탐색과정(information search process)을 구성하는 여섯 단계 즉 개시(initiation), 선택

(selection), 탐구(exploration), 확정(formulation), 수집(collection), 제시(presentation)의 각 단계마다 이용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설명한 바 있다. 각 단계별로 이용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살펴보면 불확실함(uncertainty)에서 시작하여 만족(satisfaction) 또는 실망(disappointment)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는 낙천(optimism), 혼란(confusion), 좌절(frustration), 의구심(doubt), 명확함(clarity) 등의 다양한 감정을 겪게 된다고 한다. 변호사의 경우도 법률정보 추구과정 중에 적합한 법률정보를 찾지 못한 경우 일종의 혼란, 좌절, 의구심 등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검색 시 어떤 검색 방식을 시도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15>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실패 후 검색 방식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검색어 변경 후 다시 검색	검색어 변경 후 다시 검색	검색어 변경 후 다시 검색	검색어 변경 후 다시 검색	검색어 변경 후 다시 검색	검색어 변경 후 다시 검색	검색어 변경 후 다시 검색
2위	다른 DB로 이동	다른 DB로 이동	다른 DB로 이동	다른 DB로 이동	다른 DB로 이동	다른 DB로 이동	다른 DB로 이동
3위	동료와 의견 교환	브라우징	브라우징, 동료와 의견 교환	동료와 의견 교환	브라우징	동료와 의견 교환	브라우징, 동료와 의견 교환

<표 15>에서 보듯이, 변호사들은 검색어를 변경하여 다시 검색하는 시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검색 대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동하여 기존의 검색어로 다시 검색해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적합한 검색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검색 행태 자체를 변경하여 브라우징 방식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 여러 정보추구행태 질문에서 이용도가 낮아 답변으로 거의 선택하지 않

았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방식, 즉 선후배나 동료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 방식을 검색 실패 후 상당수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앞서 여러 설문 결과(<표 7>, <표 10>)에서는 선후배 및 동료를 통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은 변호사들에게 선호되지 않는 정보채널로 분석되었으나, 정보 검색이 실패한 이후에는 동료 전문가를 상대로 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용하여 해결책을 얻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3.3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선 방향

1) 정보이용자의 법률정보DB 개선희망사항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만족여부를 조사하였다. 11명의 변호사는 '보통'으로, 10명은 '만족'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매우 만족'이나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의사표시를 한 변호사는 없었다. 그러나 중복응답을 허용한 개선점 제시 설문에서는 21명의 변호사 전원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중 19명의 변호사가 2개 이상의 개선점을 꼽았고, 과반수인 11명의 변호사는 3개 이상의 개선점을, 단 2명의 변호사만이 1개의 개선점을 꼽았다. 심지어 5개를 개선점이라고 표시한 변호사도 있었다. 이들 개선점을 선택 빈도수로 순위화 시킨 결과가 <표 16>이다.

<표 16>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선점

순위	개 선 점
1위	하급심 판례가 전부 검색되었으면 좋겠다.
2위	법령조항마다 법률 제정·개정 시의 입법취지가 함께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3위	법령조항마다 관련 판례나 용어 정의 등 참고내용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4위	둘 이상 단어 검색이나 결과 내 재검색 등 상세검색이 원활했으면 좋겠다.
5위	판결이 상급심과 하급심 판결과 함께 3단으로 제공되면 좋겠다.
6위	검색 단계가 복잡하지 않고 클릭수가 많이 않았으면 좋겠다.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힌 사항은 바로 하급심 판례의 검색 확대였다. 이는 로앤비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이용자 모두가 나타낸 개선 희망 사항이었다. 이어서 변호사들은 법률 각 조항이 입법 취지나 관련 판례, 관련 용어정의 등 연관된 정보들과 함께 검색되기를 바라고 있다.

<표 17>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선 희망사항

답변자	개선 희망 사항
1	대법원이나 국가 기관에서 판례·논문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전문을 모두 공개했으면 좋겠다.
2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법령, 판결, 논문, 주석서 등이 통합 검색되었으면 좋겠다.
3	논문을 함께 검색하고 본문 내용도 볼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다. 내용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서관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다.
4	국가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급심 판례 공개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5	최신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온라인 접근이 어렵다. 판례번호(사건번호)가 확인 가능한 경우라도 법원에 판결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정보를 입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법률서비스가 어렵다.
6	하급심 판례가 전부 검색되지 않아 불편하다. 각 판례 검색 뿐 아니라 각 사건에서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도 검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7	대부분의 법률DB의 경우 1차 검색 이후 '결과 내 재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8	하급심 판례 공개가 절실하며, 주요 법령 제정·개정 시에 제정·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 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를 국가기관에서 발간해주면 좋겠다.
9	무료로 제공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최신 판례 등 다양한 판례를 더 많이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10	로앤비에서는 외국 판례나 법령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1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시 법률안의 입법 취지, 개정 취지 등을 명확하게 검색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이러한 점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12	법률가를 상대로 한 정보 검색 방법 등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면 좋겠다.

구조화된 질문 외에 구조화되지 않은 열린 질문을 통하여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의 개선 희망 사항을 개진해달라는 요청에는 과반수가 넘는 변호사가 다양한 개선 희망 사항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급심 판례 검색 확대와 보다 상세한 법령 제정·개정 시의 입법 취지 및 논의 내용 공개가 그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변호사가 정보요구자인 동시에 정보이용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실제적 정보요구를 기반으로 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조사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 중에서도 역시 가장 많은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은 '하급심 판례의 공개 확대'였다(참조 <표 17>). 이는 변호사의 직업적 업무 특성 상 주요 업무 중에서도 소송이 가장 순위가 높았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개선 요구사항이라고 하겠다.

2)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개선 방안

Leckie 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추구행태 모델에서 정보원(sources of information)이라는 한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보요구자 즉 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 특징 및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또한 정보추구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Leckie, 1996, p.184). 이와 같이 정보원(情報源)으로서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요구자의 정보요구를 시스템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보이용자인 동시에 정보요구자인 변호사의 각각의 정보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도록 한다. 현재 변호사의 정보요구를 특징짓는 것은 요인(要人)으로서의 '변호사 업무 역할', 변수(變數)로서의 변호사 소속 기관의 규모, 변호사의 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정보요구는 정보이용자 중심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로앤비(LawnB),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는 모두 지나치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자원 중심으로만 서비스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법원 종합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보자원인 판례, 법령, 문헌, 규칙

등의 자원을 통합검색하여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업무별 또는 소속 기관별로 각각에 맞는 정보가 전혀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도 별반 다르지 않으며, 그나마 상용 데이터베이스인 로앤비에서는 “기업법무”와 “법조인”이라는 항목을 두어 로펌 변호사들을 위한 법률사무소 정보 또는 분야별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또는 기업의 사내 변호사를 위한 기업 법무 매뉴얼이나 세무 정보들을 따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는 정도이나 충분히 이용자별 정보요구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각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별로 자신의 정보요구에 맞게 정보자원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설정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둘째, 정보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 즉, 검색 행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변호사들은 검색 행태로 ‘탐색’(searching), 체인잉(chainging), 브라우징(browsing)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변호사의 정보 검색 행태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탐색’ 방식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지적하였듯이 ‘결과 내 재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도록 한다. 현재 체인잉과 관련, 1차적 법률정보를 연결점으로 링크(link)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을 때 로앤비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는 링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령을 주로 제공하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링크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 링크 기능은 체인잉의 검색 행태에서 중요한 기능적 서비스로서,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인잉을 통한 연관 법률정보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와 관련한 기술적 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정보 자원으로서의 법률정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정보는 정확성, 정보간 연관성, 최신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했던 변호사들 역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선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속성으로 정확성과 신뢰성, 최신성, 전

문성, 검색편리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표 16>의 개선점과 접목시켰을 때 법률 검색 시 우리나라의 법령 검색에 있어서 그 검색 결과의 최소 단위를 '법률 단위'가 아닌 '조(條)단위'로 바꾸어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 단위로 검색결과가 제공되어 각 조마다 법 제정·개정의 입법취지, 관련 판례, 관련 2차적 법률정보가 제공된다면, 법률이용자인 변호사들이 제안한 개선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스템 상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무료 데이터베이스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소형 로펌의 변호사나 사내 변호사가 유료 데이터베이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무에 필요한 일정한 수준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중심 개선 사항에는 본 연구에 참가한 변호사들이 한결 같이 개선되기를 희망한 하급심 판례의 검색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서비스되었으면 한다.

V. 결 론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은 전문가의 정보추구행태의 일환으로 법조인의 행태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진행되었던 시기와 달리 오늘날은 급속한 인터넷 발전으로 온라인 전자정보자원의 구축·제공·이용이 활성화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기존 선행 연구의 분석결과가 현재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행태 변화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이용자로서의 변호사 정보요구를 변호사 실무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최근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21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과 인터뷰 조사 방식의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변호사 법률정보행태관련 요인과 변수를 바탕으로 Leckie 모델(1996)과 Ellis모델(1989)을 참조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특히 변호사의 경험(경력)과 소속 사무소의 규모를 이번 연구 진행에서 변수로 고려하여 소형 로펌, 대형 로펌, 일반 회사로 나누어 각각 7명의 소속 변호사, 총 2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 연구에서 변호사의 정보요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던 요인과 일정한 변수는 오늘날 한국의 변호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경제성 또는 전문성을 추구하는 이용 목적이 맥락적 요인으로서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요인과 변수 측면이 아닌 결과로서의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특성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급격한 디지털 정보환경의 발전으로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선행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변호사의 행태 특성 중 일부는 현재 시점에

서는 원래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의 '업무 역할' 및 '업무 유형'은 선행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서도 변호사의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주요 업무인 소송, 자문, 상담 업무가 가장 많은 정보요구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변호사들 역시 정보추구행태 특성상 Leckie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호사의 경험'은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였는데,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자신의 소장자료를 경험이 적은 변호사들에 비해 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소속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한 '사무소의 규모'는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였는데, 소형 로펌의 변호사에게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보다 외국법에 대한 정보요구가 적었다. 그리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소형 로펌 변호사보다 내부 정보 등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소속 기관 자료실 이용에 있어서도 대형 로펌이 소속 자료실을 두는 경우가 많아 대형 로펌 변호사는 소속기관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넷째, 선행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선행연구 결과가 오늘날의 변호사 행태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힘든 부분도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문헌 자료나 동료 전문가를 통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변호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번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그러한 행태 특성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의 변호사의 경우 정보 콘텐츠에 있어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얻는 정보보다 법률·판례 등 공식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정보채널에 있어서도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이나 문헌자료보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방식의 전자정보자원 형태의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변호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채널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그 개선 사항을 정보이용자인 변호사의 관점에서 제

시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이어 이용자의 정보요구 측면과 검색행태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각종 법률정보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법조인의 법률정보 이용 편리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각종 서비스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광진. (1997). 『법조인의 법률정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김나원, 박지홍. (2009). "의사들의 의료정보추구행태에 관한 탐구". 『정보관리학회지』, 26(3): 425-449.

김민규. (2013). 『법률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이용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김정숙. (2010).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정보탐색과정 연구 : 쿨타우(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모형을 기반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김황우. (2012).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노정란. (1998). 『2차 法律情報 全文데이타베이스에 있어서 統制語 索引시스템과 自然語索引시스템의 檢索效率 評價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노지현, (1996). "사회과학자의 정보추구행태". 국내학술기사 학기논고집, 6: 161-185.

박성미. (1996). "공학자의 정보추구행태 :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를 중심으로". 국내학술기사 학기논고집, 6: 186-218.

배은주. (2012). 『인지적 업무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한 경영·경제 분야 연구자의 정보추구행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송종호, 오동근. (2008). "국방연구개발 연구원들의 정보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9(2): 1-25.

이경아. (1999). 『간호사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장지은. (1999).『법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현정. (1996). “인문학자의 정보추구행태”. 국내학술기사 학기논고집 6: 137-160.

조명희. (1986).『한국 생물학자의 비공식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주민지. (2013).『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최미순. (2007).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동향 고찰”. 『도서관』, 62(2): 25-53.

한승희, 이지연. (2006).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별 탐색행태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2006년도 제13회 학술대회 논문집』, 17-22.

홍기선. (2008). “의사들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33-50.

2. 국외문헌

Berring, Robert C., & Edinger, Elizabeth A. (1999). *Finding The Law*. West Publishing Co.

Case, Donald O. (2012). *Looking for Information : A Se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Cole, Charles., & Kuhlthau, Carol. (2000).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eking of novice versus expert lawyers: how experts add value". *The New Review of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1.

Ellis, David. (1989). "A Behavioural Approach to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Design", *Journal of Documentation*, 45(3): 171-212.

Ellis David., & Haugan, Merete. (1997). "Modelling the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of engineers and research scientist in an industrial environment", *Journal of Documentation*, 53(4): 384-403.

Kuhlthau, Carol C. (1991). "Inside the search process: Information seeking from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5): 361-371.

Kuhlthau, Carol C., & Tama, S. L. (2001), "Information Search Process of Lawyers: A Call for `JUST FOR ME' Information Servcies". *Journal of Documentation*, 57(1): 25-43.

Leckie, Gloria J., Pettigrew, Karen E., & Sylvain, Christian. (1996). "Modeling the Information Seeking of Professionals : A General Model Derived from Research on Engineers,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Lawyers". *The Library Quarterly: Information,*

Community, Policy, 66(2): 161-193

Makri, Stephann., Blandford, Ann., & Cox, Anna L. (2008). "Investigating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academic lawyers : From Ellis's model to design".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4(2): 613-634.

Makri, Stephann. (2009). *A study of lawyers' information behaviour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two methods for evaluating electronic resources.* Doctoral The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Otike, Japhet. (1999). "The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Habits of Lawyers in England : A Pilot Study".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31(1): 19-39.

Otike, Japhet., & Matthews, Graham. (2000). "Legal Information needs of lawyers in Kenya : a case study". *Library Management*, 21(5): 241-252.

Sutton, Stuart A. (1994). "The Role of Attorney Mental Models of Law in Case Relevance Determinations: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3):186-200.

Wilkinson, Margaret Ann. (2001). "Information sources used by lawyers in problem-solving : An empirical exploratio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3: 257-276.

Wilson, Thomas D. (1999). "Models in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Journal of Documentation,* 55(3): 249-270.

Wilson, Thomas D. (2000). "Human Information Behavior", *Informing science*, 3(2): 49-55.

3. 웹사이트

대한변호사 협회. 2014년 9월 24일 보도자료. 검색일자: 2014년 11월 30일.
< http://www.koreanbar.or.kr/notice/board02_detail.asp >

뉴스토마토. 2014년 10월 31일자 기사. “법무부 '변호사 전문분야 법제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 검색일자: 2014년 11월 30일.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09165 >

법률신문(인터넷판). 2014년 5월 1일자 기사. “법무법인 동인, 창립 10년 만에 10대 로펌 진입. 변호사 100명… '10-100-10' 전략 성공”. 검색일자: 2014년 11월 30일.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213 >

예스로. 검색일자: 2014년 12월 1일.
< http://www.yeslaw.com/lims/front/layout.html >

부 록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연구의 목적은 일련의 변호사 정보추구행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법률정보DB의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바쁘시지만 변호사의 실무에서 생겨나는 정보요구, 정보검색, 정보획득 등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설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에는 작성자의 성명·소속 등 개인정보 기재란이 없으며, 내용 역시 저의 연구 및 논문작성 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2일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 김 지 현
지도교수 : 서 은 경

Ⅰ. 작성자 정보

1. 소속 및 경력

성 별	[ ] 남성 [ ] 여성	연 령	[ ] ~ 30대 [ ] ~ 40대 [ ] ~ 50대 [ ] 60대~
소 속	[ ] 중소형로펌 [ ] 대형로펌 (변호사 70인 이상) [ ] 일반기업체 및 기관	경 력	[ ] 1년 ~ 5년 [ ] 6년 ~ 10년 [ ] 11년 ~ 15년 [ ] 16년~

2. 전문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가능)

[ ] 민사
[ ] 형사
[ ] 상사 (기업, 무역, 경제법 분야 포함)
[ ] 이혼 (가족관계 포함)
[ ] 인권 및 행정소송
[ ] 세무
[ ] 지적재산권
[ ] 보험
[ ] 의료
[ ] 노동 (산재 포함)
[ ] 엔터테인먼트
[ ] 기 타 ( )

3. 주업무(主業務)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 3순위까지 순위별로 표시해주세요)

[ ] 클라이언트(client) 상담

[ ] 계약서 작성·검토 등 자문

[ ] 소송 또는 분쟁해결방안(중재, 조정, 협상) 수행

[ ] 각종 논문, 보고서, 법학저널원고 등 작성

[ ] 강의, 발표

[ ] 기 타 ( )

Ⅱ. 정보 추구

※ 정보요구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에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식하여 정보의 필요성을 갖게 되는 상태입니다.

※ 정보추구란, 정보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정보를 입수하려는 의식적 노력의 행위입니다.

4. 다음 업무 과정 중 <u>거의 항상</u> 정보요구가 발생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1, 2, 3순위까지 순위별로 표시해주세요)

[ ] 클라이언트 상담

[ ] 계약서 작성·검토 등 자문

[ ] 소송문 및 분쟁해결 관련 문서 작성

[ ] (사실관계 등) 증거 파악·수집

[ ] 각종 저술 (논문, 보고서, 법학저널 등)

[ ] 강의, 발표

[ ] 영업 (사건 수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외부활동)

[ ] 행정업무 (주된 업무 수행에 따르는 내부절차행위)

[ ] 기 타 ( )

5. 정보요구 발생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u>각 순위를 모두 표시해주세요</u>)

[ ] 법령 및 판례

[　　] 내부 문서 (기존 계약서 및 기존 소송서류)
[　　] 전문가(선후배 및 동료 등)의 조언·자문
[　　] 전문도서(교과서 등)
[　　] 논문, 보고서, 저널
[　　] 최신 동향정보, 뉴스
[　　] 기 타 (　　)

6. 이러한 정보들의 주된 입수경로는 무엇입니까?
(1, 2, 3순위까지 순위별로 표시해주세요)
[　　] 본인 소장 자료
[　　] 전문가(선후배 및 동료 등)
[　　] 본인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 자료실
[　　] 외부기관(도서관, 연구소, 정보서비스기관 등)
[　　] 로앤비 등 법률정보DB
[　　] 인터넷검색엔진 및 소셜네트워킹시스템(SNS)
[　　] 각종 학회,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　　] 기 타 (　　)

Ⅲ. 법률정보

※ 본 연구에서 "법률정보"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규 및 판례·결정 등 모든 법원(法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법원칙이나 학설 등을 제시하는 참고 문헌(논문, 주석서, 교과서 등) 역시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7. 주로 이용하는 법률정보의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각 순위를 모두 표시해주세요)
[　　]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약, 조례 등 포함)
[　　] 헌법재판소 결정
[　　]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
[　　] 기존 계약서 및 기존 소송서류 등 샘플자료

[ ] 법학관련 전문서적(교과서 등)
[ ] 법학관련 학술논문 및 보고서
[ ] 최신 동향정보·뉴스
[ ] 각종 법무 서류 양식(form)
[ ] 기 타 ( )

8. 외국법률정보 중에서는 주로 어떤 콘텐츠를 검색하십니까?
(1, 2, 3순위까지 순위별로 표시해주세요)
[ ] 외국의 법령
[ ] 외국의 판례
[ ] 외국법에 대한 전문서적·논문
[ ] 외국법에 대한 최신 동향·뉴스
[ ] 외국의 실무 양식(계약서, 소송서류 등)
[ ] 거의 검색하지 않음
[ ] 기 타 ( )

9. 이러한 법률정보들의 주된 입수경로는 무엇입니까?
(1, 2, 3순위까지 순위별로 표시해주세요)
[ ] 로앤비 (LawnB),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등 전문 법률정보DB
[ ] 구글(Google)검색엔진 및 구글북스(Google Books)
[ ]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검색엔진
[ ] 문헌자료(전문서적, 논문, 보고서, 저널 등)
[ ] 전문가의 자문(선후배·동료 변호사 등)
[ ] 기관 내부 자료 또는 개인 작성 자료
[ ] (외부 제공처로부터) 메일링 서비스
[ ] 기 타 ( )

10. 법률정보를 검색할 때 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1, 2, 3순위까지 순위별로 표시해주세요)

[ ] **서베잉(surveying)**

관심있는 정보가 무엇이 있나하는 式으로, 포괄적으로 찾아보는 방식

[ ] **모니터링(monitoring)**

관심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특정 DB·웹사이트를 검색하는 방식

[ ] **탐색(searching)**

검색어[관련 키워드, 법률명, citation(17 USC §101), 당사자명, 판례번호 등]을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특정적으로 검색하는 방식

[ ] **브라우징(browsing)**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특정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

[ ] **체인잉(chaining)**

검색된 정보를 근간으로 하여 관련 정보도 검색하는 방식

[ ] 기 타 ( )

Ⅳ. 법률정보DB

※ 법률정보DB에는 “로앤비(LawnB)”와 같은 상업용DB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DB"와 같은 공공DB가 있습니다.

11. 선호하시는 법률정보DB는 무엇입니까?

(1, 2, 3순위까지 순위별로 표시해주세요)

[ ] 로앤비 (LawnB)

[ ] 로앤비외의 상업용DB (DB명 :)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 헌법재판소DB (http://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 ]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main.gz)

[ ] 법제처 입법예고DB (http://making.law.go.kr/main)

[ ] 기 타 ( )

12. 법률정보DB 이용에서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1, 2, 3순위까지 순위별로 표시해주세요)

[ ] 신뢰성 (권위있는 출처 등)
[ ] 정확성 (정확한 정보제공)
[ ] 최신성 (신속한 개정 반영 등)
[ ] 전문성 (분야별 전문성 등)
[ ] 다양성 (다양한 정보제공)
[ ] 검색편리성 (법령·판례 연계검색, 통합검색 등)
[ ] 시각적 용이성 (레이아웃 등)
[ ] 기 타 ( )

13. 법률정보DB 사용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 ] 매일
[ ] 격일
[ ] 주 1~2회
[ ] 월 1~2회
[ ] 연 4~6회
[ ] 연 3회 이하

14. 한 회 일정 법률정보획득에 드는 평균 DB검색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 30분 이내
[ ] 1시간 ~ 2시간
[ ] 2시간 ~ 4시간
[ ] 4시간 이상

15. 법률정보DB에서 사용하는 주된 검색점(검색어)은 무엇입니까?
(1, 2, 3순위까지 순위별로 표시해주세요)

[ ] 중요 단어(키워드)
[ ] 법령명

[　　] 법령(공포)번호
[　　] 판례 당사자명
[　　] 판례번호
[　　] 자료명, 저자명, 출판사명
[　　] 기 타 (　　)

16. 적합한 법률정보를 찾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1, 2, 3순위까지 순위별로 표시해주세요)
[　　] 검색어(또는 검색어 조합)를 변경해서 다시 검색함
[　　] 다른 검색DB나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동일한 검색어로 검색함
[　　] 검색어를 사용하지 않고 브라우징을 통하여 적합한 정보를 찾아냄
[　　] 부분적으로 적합한 정보로 만족하고 검색을 끝냄
[　　] 적합한 검색결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검색을 끝냄
[　　] 선후배, 동료 등 전문가와의 의견교환
[　　] 기 타 (　　)

17.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법률정보DB에 만족하시나요?
[　　] 매우 만족
[　　] 만족
[　　] 보통
[　　] 다소 불만족
[　　] 매우 불만족

18. 법률정보DB 이용에 있어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복수응답 √ 가능)
[　　] 법령조항마다 관련 판례, 용어정의 등 참고자료가 함께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　　] 법령조항마다 制定·改正 시의 입법취지가 함께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　　] 하급심판례가 전부 검색되었으면 좋겠다.

[ ] 해당 판결의 상급심판결문과 하급심판결문이 3단으로 함께 제공되면 좋겠다.

[ ] 둘 이상의 단어를 조합하는(&, OR, Not 등) 상세검색이 원활했으면 좋겠다.

[ ] 검색 단계(depth)가 복잡하지 않고 클릭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 기 타 ( )

19. 전문가로서 정보추구 시에 느꼈던 불편사항이나 개선희망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Lawyer's Leg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for the Law Practice

Kim, Ji-Hyun
Major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study on the lawyer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has continued since 1990s. However, the recent digital information environment made the existing lawyers' information seeking habits changed rapidly, therefore the new need of reviewing the changes occurred.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awyer's leg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for the law practice in Korea nowaday on the basis of factors, variables, behaviors' features excerpted from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models regarding to the lawyer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This study performed the positive researches by means of the questionnaire surveys and the interviews with 21 attorneys working in law firms or corporations. This study resulted in through them that "the

lawyer's work role" from the Leckie's model, has been applicable to the attorneys in Korea as a factor giving effects on the information needs, and the attorney's experience and the law firm's size have been available variables as ever. Furthermore, this study showed that "the purpose of seeking information" also has worked as one of the contextual factors.

However some features in the behaviors from the previous studies, such as the lawyer's preference to literature resources or informal communication, seemed not to be proper anymore for korean attorneys, because we found that korean practicing attorneys preferred using online database and formal information to literature resources or informal communication in this study.

Moreover, this study accepted attorneys' opinions on the improvements of database services providing legal information and most of them showed their needs of more extended disclosing of lower level cases in database and more enhanced database services by governmental agencies. In consideration of them, this study propose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of database services. Consequent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meaningful contents to other studies in lawyer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and offer a effective solution and a theoretical basis for the improvements of legal information database services and any legal service.

【Key word】 lawyer, attorney, information need, leg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legal information database.